

로 된 회원카드를 발급하기 시작했다.

97년에도 서비스개발은 계속 이어져 아시아나는 4월 20일부터 항공기 비상대피 요령 등을 알리는 '시각장애인 안전수칙'이란 책자를 한, 영, 일어 3개국어의 점자로 제작해 기내에 비치해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한편 대한항공은 97년 3월 미국 보잉사의 최첨단 여객기 B777 기종을 처음으로 도입 했다. 이 기종은 비행기의 1등석 및 비즈니스석에 전화기가 달린 개인용 비디오를 채택했고, 2등석에는 벽걸이형 전화기와 천장에 부착된 비디오가 설치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PC전용 콘센트가 끌려 있어 노트북 컴퓨터의 사용도 가능하다. 특히 이 기종에는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별도로 설치되었다. 이밖에 대한항공은 장애인을 위해 별도로 공항용램프버스를 운행해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쉽게 버스에 오르내릴 수 있게 했다. 아시아나항공은 팔걸이부분이 탈착될 수 있게 만들어져 장애자들이 쉽게 앉고 일어설 수 있는 장애인용 특수 좌석을 채택해 좀더 안락한 여행을 도모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 항공사의 서비스는 장애인고객에 대한 에티켓 등 장애인 응대 서비스를 개발하는 단계로 이어지고 있다. 이를 위해 양대 항공사는 각각 장애인 응대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97년 장애인의 날에 맞추어 '장애인 고객응대 특별교육' 과정을 개설했다. 이 교육은 공항현장 근무지원들의 장애인고객을 위한 수화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97년 4월부터 시각장애인 응대전문교육을 도입했다. 전승무원이 이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는데 교육과정은 시각장애인의 심리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이론교육을 포함, 이를 기초로 한 인사, 안내, 음료서비스 등의 응대요령으로 짜여져 있다. 한편 97년 7월 11일에는 한국공항공단이 김포공항 자원봉사대를 발족했다. 이 봉사대는 입국 수속 요령, 유아, 노약자 보호,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카 운영 등의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한편, 최근 몇몇 여행사들은 장애인 전용 투어를 마련하고 있다. 96년 5월 해외관광개발(주)은 국내 최초로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인 대상 여행상품을 개발하고 그해 6월 방콕 푸켓 여행상품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갔다. 이 프로그램은 기내 특수휠체어 등 전문장비를 비치하고 한팀(10~15)당 수화교육 등 전문교육을 받은 여행보조원 2명을 배치하고 있다. 여행코스로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 승객에게 편한 코스를 선정하고 재활단체 등 장애인시설 관람 일정도 포함하고 있다.

뒤를 이어 세방여행사는 97년 대한항공, 호주관광청, 뉴질랜드관광청과 협조로 '장애인 패키지 및 허니문' 상품을 개발해 10월 28일 첫팀을 출발시켰다. 이 패키지는 장애인의 이동시간을 고려해 일정을 여유있게 했고 관광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

한 각종시설(지체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된 객실, 휠체어 이용시 식사가 가능한 식당, 리프트가 설치된 장애인 전용 차량 등)과 지형 등을 고려해 여행지를 선정 했다. 여행지로 호주와 뉴질랜드를 선택한 것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이러한 조건에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다. 장애인 여행프로그램은 15명당 2명의 도우미와 1명의 안내원, 1명의 간호사가 동행하고 현지관광시 휠체어가 무료로 제공된다.

그러나, 이들 여행 상품은 본격적인 장애인 여행상품으로 보기에는 문제점이 많다. 특히 세방여행사의 프로그램의 경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동행해야 한다는 것이 조건으로 붙어있고, 정신지체인 및 전신마비 장애인은 아예 제외하고 있다. 맹인안내견 동반도 허용되지 않으며 청각장애인은 구화인식이 가능해야 하는 등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 게다가 비용부담이 커 장애인들이 선뜻 이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최근에는 TC(Tour Conductor), 즉 여행설계사라는 신종직업이 생겼다. TC는 현지 가이드와는 달리 출국에서 입국까지 손님들의 여행 전부를 책임지는 여행전문가이다. 따라서 장애인들이 활용하기에 적절한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장애인 TC를 꿈꾸는 전문 TCC씨는 97년 4월 장애인 8명을 끌고 인솔해 3박4일 여행 일정 동안 장애인들을 무사히 안내했다. C씨는 휠체어를 밀어주는 것은 물론이고 계단이 가파른 곳에서 장애인 관광객을 업어 옮기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아직은 생소한 직업이지만 현재 NTA라는 TC 전문교육기관까지 등장하고 있어 앞으로는 전문 TC들이 속속 배출되어 새로운 여행문화의 첨병으로 떠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이전까지는 생활여유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장애인이 여행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지만 앞으로는 장애인의 여행기회가 부쩍 늘어나리란 전망이다.

VI. 장애인의 재활복지용품 개발-기업 중심으로

1994년 12월 서울의 갤러리 '서호'에서는 특이한 전시회가 열렸다. 춘천 소재 대학의 산업디자인학과 교수와 학생들로 구성된 '뜻을 함께한 모임'이라는 모임이 개최한 생활용구 디자인전이었다. 이 전시회에는 센서(전자감지기)를 부착하고 접을 수 있게 디자인한 지팡이나 목걸이, 점자 은행통장, 중앙에 고무막대를 세워 음식을 구

분할 수 있도록 한 급식판 등 시각장애인에게 유용한 제품들이 전시되었다. 여기서 전시된 점자 통장은 95년 하나은행에서 채택하기도 했지만 아쉽게도 대부분의 아이디어는 상품화로 연결되지 못하고 연구 수준에 머물고 말았다.

장애인 제품은 시장성이 없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기업이 장애인을 겨냥한 제품에 눈길을 돌리기 시작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다. 이전까지는 장애인을 위한 제품이라고 해봐야 의족, 보청기, 활체어 등 보장구류에 한정되어 있었다. 그 외의 장애인의 편의를 돋는 아이디어 상품이 발명되거나 재활공학 차원의 기기들이 개발되어지기는 하였으나 상품화 단계까지 발전하지 못했다. 시장성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9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야 대기업들이 장애인을 겨냥한 제품을 내놓기 시작했다. 기업들이 장애인을 고객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기업들이 내놓는 장애인 제품도 전에 비해 무척 다양해졌다. 식품이나 음료 용기에 점자로 글자를 새기는 아이디어 상품에서부터, 장애인용 승용차, 청각장애인을 겨냥한 문자 통신기거나 청각장애인용 전화기들이 경쟁하듯이 출시되었고 최근에는 편의증진법 시행에 맞추어 대기업들이 점자유도블록과 엘리베이터 산업에 뛰어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 선진복지국가처럼 장애인들의 욕구에 맞추어진 다양한 장애인 재활복지용품이 등장하지는 않고 있다. 장애인 재활복지용품의 활성화는 장애인의 생활수준 향상과 국가의 복지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장애인 재활복지용품이 하나의 산업으로까지 발전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1. 점자아이디어 상품

최근 들어 식품이나 음료수의 용기에 점자로 글자를 표시한 소위 점자제품 개발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약간의 투자로 시각장애인들을 고객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들이 즐겨 채용하고 있다.

국내 점자제품의 시초는 점자제품이 지금처럼 봄을 이루기 훨씬 전인 94년 5월 금성사가 신제품으로 개발한 카오스세탁기였다. 이 제품은 단순한 몇 개 글자를 점자로 새기는 차원을 넘어 세탁기 버튼마다 점자로 표기를 해 시각장애인들도 쉽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한 전향적인 제품이었다.

이후 한동안 점자제품이 나오지 않다. 96년 12월 조선맥주가 점자맥주라는 것을 내놓아 대단한 화제를 끌었다. 하이트 캔맥주 뚜껑부분에 맥주라는 글자를 양각한

제품이었다. 처음에는 일본에서 점자맥주가 나와 대히트를 기록한 데서 착안해 단순히 타사 제품보다 매출을 올리려는 마케팅 차원의 아이디어였는데 시각장애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등 대히트 상품이 되어 매출액을 높여 주는 효자상품이 되었다. 조선맥주와 비슷한 시기에 동양맥주에서도 카스 캔맥주에 점자를 채택하면서 점자상품의 봄이 본격화되었다. 이러한 반응에 힘입어 조선맥주는 97년 2월 먹는 샘플 퓨리스와 5월 하이트엑스필 등 신제품에도 계속 점자를 채택했다.

97년 4월부터는 (주)비락도 점자 제품 생산에 뛰어들었다. 역시 캔제품에 점자를 새겨넣었는데 맥주회사와는 달리 '음료'라는 글자에 시각장애인을 사랑한다는 뜻의 하트 모양까지 새겨넣었다. 비락은 이후로 개발되는 전제품에 점자를 채택하기로 했다.

한때 캔뚜껑을 돌출시킬 경우 캔내면에 칠이 벗겨지면서 내용물을 부식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지만 이를 보완하는 기술이 개발되었고 뚜껑에 점자를 새기는 비용이 개당 1~2원씩 추가로 들어가지만 회사이미지를 위해 이를 채택하는 기업들이 많아지는 추세이다.

한편 모닝글로리는 기존의 엽서 위에 에폭시(EPOXY) 수지를 이용해 점자 등을 입체적으로 특수처리한 점자엽서를 내놓아 인기를 끌었다. 이 엽서는 "넌 정말 사랑스러워" "네가 있어 난 행복해" "넌 정말 최고야" 등 10종의 메시지를 점자로 처리해 장애인을 생각하는 기업으로서 모닝글로리의 이미지를 높여주었다(97년 4월).

최근에는 웅진코웨이가 신제품 정수기를 내놓으면서(98년 2월) 점자 표시기능을 채택했다. 최근에는 신인가수 정시연 씨가 앨범을 내면서 머리곡의 가사를 점자로 표기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점자 채택은 서비스업에까지 등장했다. 피자헛은 외식업계 최초로 점자메뉴판을 선보였다. 신제품을 출시하는 기념으로 97년 7월 21일부터 전 매장에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메뉴판 서비스를 실시한 것이다. '열린 마음 함께 하는 세상' 이란 취지를 담은 이 점자 메뉴판 서비스는 메뉴및 판매가격을 일일이 물어서 주문해야 했던 시각장애 고객들에게 보다 나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차원에서 기획되었다.

새로운 점자기술 개발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신기술개발 전문회사 테크노 티는 96년 연말에 일반 인쇄물 위에 투명수지를 이용 점자를 덧씌우는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해 화제가 되었다. 이 점자방식은 기존 아연판 천공방식에 비해 점자를 입히기 쉽고, 빠른 시간 내에 대량생산이 가능할뿐 아니라 어떤 재질의 인쇄물이든 그위에 덧씌워 점자를 만들 수 있기 때문 일반인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테크노 티사는 이

기술을 이용한 공공안내판, 카드, 그림책, 잡지 각종 용기를 전시회에서 선보였다. 테크노 사가 특수 점자기술을 개발해냄으로서 점자제품의 활성화를 촉발해 실제로 일부 기업은 이 기술을 채택해 점자상품을 만들기도 했고 '97 국제만화제에 이 기술을 이용한 만화가 선보이기도 했고 일부구청에서는 소식지를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테크노 티 방식의 점자는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촉감이 거칠어 책자를 만들기에는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 있기도 했다.

한편, 금형업체인 선일금형화학은 엘리베이터용 점자버튼을 국내최초로 개발했다. 기존의 제품이 점자를 버튼과 별도로 외부에 설치해 이중으로 감지해야 하는 불편이 따랐으며 점자크기 등 설치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았고 접착부위가 떨어지거나 마모가 발생하는 단점이 있었는데 비해 이 회사의 제품은 아예 버튼안에 점자를 삽입시켜 이러한 문제를 방지했다. 이 회사는 점자버튼의 표준화 작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2. 점자를 사용한 제품 설명서 및 회사광고

위에 소개한 것처럼 점자제품들이 잇달아 등장하고 있지만 점자의 활용은 기업의 홍보에서 그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

최근들어 기업들이 점자를 사용해 제품설명서를 만들거나 회사 광고에 활용하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

점자를 기업이미지를 알리는데 가장 먼저 활용한 것은 금융기관이었다. 조흥은행은 93년 4월 20일부터 국내최초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안내장을 모든 점포에 비치하고 시각장애인 학교·단체·기관 등에 발송하는 서비스를 실시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을 위한 점자통장도 국내최초로 개발했다. 이후 신한은행은 95년 1월 예금거래 점자서비스를 개발해 내놓았다. 시각장애인의 예금계좌 개설, 입금, 출금, 해지 등 예금거래를 할 때 점자로 인쇄된 거래내역서를 예금통장과 함께 교부하는 서비스였다. 신한은행은 전 예금에 이 서비스를 도입하는 한편 전화 한 통화로 은행업무를 보는 텔레뱅킹서비스에 대한 점자안내장을 시각장애인들에게 발송했다.

이전까지는 대부분의 시각장애인들이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해 여유자금이 있어도 은행에 예금을 하지 않고 주로 현금으로 보관하는 경향이 많았다. 그래서 항상 도난과 분실의 위험이 따랐으며 예금을 하는 경우에도 대리인을 통한 수밖에 없어 개인 재산의 노출은 물론 사기사건 등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았다. 은행의 이러한 서비-

스 개발은 고객서비스 차원을 넘어서 장애인들의 경제적인 권리를 보장해 준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한편 삼성생명은 국내 최초로 점자식 보험증권을 개발해 97년 5월에 선보였다. 점자식 보험증권이란 보험상품에 가입한 고객이 받는 계약증서에 보험계약 내용과 상품의 종류, 계약유지를 위해 알아야 할 사항 등을 점자로 표기한 것이다(97/04/12 경향).

점자를 제품설명서에 채택 사례도 늘고 있다. 해태전자 인켈사업본부는 CD 1장에 최대 54시간까지 음성정보를 수록할 수 있는 CD오디오북을 개발하면서 A4용지 16페이지 분량의 점자로 된 사용 설명서를 1만부를 제작해 무료 배포했다. 일반 설명서보다 제작비가 10배가 비싸지만 CD오디오북이 음성으로 책의 내용을 들을 수 있는 시각장애인에게 유용한 기기라는 점에서 시각장애인 고객을 확보하려는 적극적인 발상으로 평가된다(97년 4월). 그리고, 98년 1월에는 한국통신 프리텔이, 시각장애 고객을 위해 자사 개인휴대통신(PCS) 사용안내서를 점자본으로 제작 한국시각장애인복지회에 전달했다. 이 설명서에는 PCS 016의 사용방법, 통화지역, 요금제도, 부가서비스 및 PCS 016 영업소 등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점자 활용은 회사 이미지 홍보면에서도 애용되는 매체이다. 우방그룹은 96년 1월 기준 사보인 '사랑으로 사는 집'의 일부를 점역해 국내 최초의 점자 사보를 발간했으며 한화그룹과 갤러리아 백화점은 시각장애인들과 가족을 대상으로 캘린더에 에폭지수지로 점자를 입힌 98년도용 점자캘린더를 제작, 무상으로 배포했다.

삼성전자는 점자를 광고에 활용하기도 했다. 96년 컴퓨터시스템 사업부 네트워크팀은 컴퓨터 전문잡지인 〈컴퓨터월드〉, 〈네트워크컴퓨팅〉 등 5개 전문지에 일제히 점자광고를 실어 광고계에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A4 크기의 특수지 한면에 새겨진 이 광고는 '네트워크하면 삼성 네트워크, 21세기 첨단정보시대를 공유하는 삼성 네트워크!'라는 내용을 담은 4줄의 점자가피로 구성돼 있다.

이 광고의 가장자리에는 일반인들을 위해 컬러로 된 삼성전자 로고와 '시각장애인에게 정보의 길을 열어준 점자'라는 문구와 함께 점자의 내용을 풀이해주는 깨알 같은 크기의 설명문이 담겨 있었다. 삼성전자는 "정보와 정보를 연결하는 첨단 네트워크 기술은 모두 손가락 끝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해 점자광고를 기획했다"면서 "멀티미디어의 기본 정신이 휴머니즘이라는 점을 매스미디어 광고에 반영 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96/04/10).

삼성은 더 나아가 장애인을 겨냥한 제품디자인을 그룹홍보의 전략으로까지 발전시키고 있다. 삼성계열의 종합광고 대행사인 제일기획은 97년 3월 '디자인 경쟁력을

'높여 불황을 돌파하자'는 주제로 광고주를 대상으로 하는 디자인 제안전을 열어 기업들의 관심을 끌어모았다. 이 기획전에서는 장애인을 고객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각종 아이디어도 소개되었다. 제일기획은 삼성그룹의 고객용 달력에 점자표시를 같이 넣고 사외보 및 각종 간행물은 물론 TV 리모콘, 핸디폰 등에도 점자를 넣을 것을 제안했다. 핸디폰에 점자를 같이 넣는데 드는 비용은 개당 30원에 불과하고 이 정도 비용 투자로 7만 명의 장애인을 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함께 사는 사회 구현'이라는 삼성그룹의 이념에도 부합돼 그룹이미지 제고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내세웠다. 제일기획의 제안은 즉시 삼성그룹으로부터 전격 채택되었다 (96/03/28).

한국통신도 점자서비스를 채택하고 있다. 한국통신은 96년 8월 점자전화번호부를 제작 공공기관에 무료 배포했다. 이 전화번호부에는 일반생활에 필요한 생활안내 전화번호, 관공서 및 단체, 종합병원, 금융기관, 시각장애인 관련기관, 5천7백여명의 시각장애인 전화계약자, 안마시술원 등이 두권에 나뉘어 수록돼 있다. 한국통신은 요금청구서에도 점자를 채택했다. 94년 7월 한국통신 부산사업본부에서 공공요금고지서 가운데 처음으로 점자 전화요금 청구서를 개발해 일부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발송했다. 이 점자청구서는 일반 전화요금청구서 아래 별지에 요금내역이 점자로 별도 인쇄되어 있는데 95년 상반기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되고 있다.

한편 SK텔레콤은 98년부터 이동전화와 무선후출의 기본료, 부가서비스료, 정보이용료 등 요금 세부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점자요금청구서를 발행하고 있다.

3. 장애인 승용차

그동안 장애인용 승용차와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산업은 수요가 충분하지 않아 시장성이 없다는 이유로 대기업이 손대기 꺼려하는 분야였다. 그러나, 최근들어 이 분야에 대한 대기업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복지정책의 확대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데 장애인용 LPG 차량 수요의 급증과 편의증진법 제정 등에 따라 이 분야의 산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여진다.

장애인 차량에 LPG 장착이 허용된 것은 91년 장애인복지법에 LPG 사용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면서부터였다. 93년 9월 1일부터는 LPG 허용대상이 기존 2~4급 장애인과 1,500CC 미만 소형승용차에서 2,000CC 미만의 모든 장애인과 그 대리인의 차량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보건사회부는 장애인이 LPG 승용차를 구입하려고 할 때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자동차회사들이 생산, 판매하도록 장애인복지 사업지침을 내렸다. 그러나 자동차회사들은 처음에는 장애인용 LPG승용차 생산을 꺼렸다. 장애인용 LPG승용차는 자동기어를 사용해야 하므로 자동변속기 개발에 당시로 1천억 원의 돈이 드는 데다 수요가 매년 2천대를 넘지 않아 정부 보조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한동안 장애인용 승용차가 생산되지 않았고 장애인들은 개인적으로 LPG 승용차로 개조해야 했다.

이후 장애인용 승용차가 본격적으로 생산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장애인 면허취득 허용이 확대되고, 각종 자동차 관련 세금면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 장애인 차량에 관한 혜택이 늘어났고 여기에 유가 급등까지 겹쳐 LPG 차량 개조와 장애인용 승용차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94년 현재 운전면허 취득 장애인 4만5천5백90명)함에 따라 주요 자동차 회사들이 차례대로 장애인용 승용차를 내놓기 시작했다.

본격적인 장애인용 승용차가 개발되기 이전인 94년 6월 현대자동차는 엑셀 2대를 장애인 운전교습용 특수차량으로 제작했다. 이차는 좌수우족 장애인용 및 양족장애인용 차량의 조수석에 보조브레이크를 장착한 차량으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기증했다.

95년 9월 현대자동차는 엑셀레이터, 브레이크, 방향지시기 등 특수 운전 장치를 장착한 장애인용 아반떼를 개발해 '95 서울 국제 노후 및 장애인 복지산업전에 출품했다. 공식적으로는 국내에서 개발된 첫 장애인승용차였다. 그보다 앞선 7월에 이미 대우가 장애인용 승용차인 넥시아(씨에로)를 개발했지만 이는 내수용이 아닌 수출용이었다. 크로아티아 내전으로 전쟁부상자가 급증하자 94년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전상장병협회가 장애인용 차량 1천대를 주문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다. 96년 4월 현재 자동차 3사가 내놓은 장애인용 승용차는 현대자동차의 액센트, 아반떼, 대우의 티코, 씨에로, 에스페로, 프린스, 기아의 프라이드, 세피아 등이었다. 장애인용 승용차의 판매량도 부쩍 늘어 95년 한해동안 현대, 기아, 대우 등 자동차 3사가 장애인들에게 판매한 장애인용 차는 4천7백4대에 달하고 여기에 장애인들이 일반차량을 구입, 개조한 차까지 더하면 6천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96년 들어 쌍용자동차가 4월 장애인용 승합차 이스타나 - 10을 시판하기 시작했는데 이 승합차는 국내 최초로 리모트콘트롤로 작동이 가능했고, 활체어를 3대까지 탑승시킬 수 있어 주목받았다. 현대자동차는 5월 LPG를 장착한 장애인용 소나타3.0

5개 모델을 개발해 시판하기 시작했고 이어 6월에는 장애인용 아반테투어링 1.55개 모델을 개발했다. 8월에는 현대 정공이 장애인용 쌍타모 200S 오토매티 6개 모델을 개발해냈다. 12월에는 쌍용자동차가 휠체어 적재장치를 장착한 장애인용 무쏘 6개 모델을 내놓았다.

97년 들어서는 대우자동차가 현대자동차의 아반테에 이어 1.5 DOHC 장애인용 누비라를 개발해 출시했다. 이렇듯 장애인용 승용차가 잇따라 개발되고 있지만 장애인들의 실직적인 욕구를 제대로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장애인용 승용차를 구입해도 다시 개조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또한 외국에서는 보편화된 휠체어를 탄 채 운전할 수 있는 승용차가 국내에선 아직 개발되지 않고 있다. 관련업계는 이런 장애인 차량을 언제든지 개발할 수 있지만 수지타산이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생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90년대 중반부터 장애인용 승용차외에 특수차량의 개발도 속속 이루어지고 있다. 94년 4월 특장차메이커인 서울차량공업은 국내 최초로 장애인 및 노약자용 4인승 이동식 목욕차량을 개발했다. 이 차량은 기아자동차의 하이베스타를 개조해 만들었는데 교통부로부터 이동식 목욕차량 생산에 대한 형식승인을 받고 기아자동차 판매망을 통해 시판됐다.

이어 휠체어리프트 업체로 유명한 창립정공이 96년 7월 이동목욕차를 국산화하고 이동목욕차량 생산에 뛰어들었다. 당시 이 차량은 강동사회종합복지관, 서부장애인 종합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에 납품되었다. 97년 7월말에는 선진외국은 이미 오래 전에 보편화된 초저상버스가 대우자동차와 현대중공업에 의해 국내에서도 개발되었다.

초저상버스는 실내 바닥높이가 평균 34cm밖에 안돼,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나 어린이, 노약자들도 을 장착, 도로여건에 맞춰 차체 바닥높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또 3개의 대형 승강문 중 중간문에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한 휠체어 탑승장치를 별도로 마련했다. 이 두회사가 각각 내어놓은 초저상버스는 제1회 서울국제대중교통전에 출품되어 선보였다(97/08/05-09).

4. 장애인 재활복지용품 및 관련산업

장애인의 편리한 생활이나 이동을 돋는 본래 의미의 장애인 재활복지용품의 개발은 아직도 지지부진한 형편이다. 그나마 장애인용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형편이다. 아직도 대기업들은 수요가 없다는 이유로 장애인용품 개발에 나서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아남 전자는 95년 5월 국내 처음으로 캡션 기능 내장 21인치 컬러TV(모델명 CK-2192CR) 개발해 시판에 나섰다. 캡션기능의 제품들은 음성과 별도로 자막을 삽입해 청각장애인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임에도 이렇다 할 제품들이 개발되지 않고 있다.

가구업체인 한샘과 훼밀리는 장애인에 편리한 부엌가구를 개발했다. 한샘은 95년 말 장애인용 부엌가구를 개발했는데 이 가구는 휠체어나 의자에 앉은 채 모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즉, 사용자가 앉아서 밥짓기, 설거지 등은 물론 전자레인지, 식기세척기를 작업반경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했고 작업대 하부의 수납 공간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했으며 작업대에 자동 상하이동시스템을 부착, 작업대 높이도 조절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었다. 96년 3월에는 부엌가구 전문업체 훼밀리가 역시 기존 부엌가구와의 차별화 위해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부엌가구를 선보였다.

독특한 아이디어로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제품들도 눈길을 끈다. 귀뚜라미보일러가 올해 2월 개발한 말하는 보일러는 가스누출, 연료부족, 실내공기오염 등을 음성으로 경보하는 기능과 외출, 취침, 목욕 등의 기능도 음성으로 알려줘 노약자나 장애인, 어린이들이 쉽고 안전하게 보일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아이디어가 돋보인다. LG전자는 에어컨 등 가전제품에 사용할 수 있는 양각의 선기호를 이용한 특수 리모컨을 개발해 시각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세이프 웨이사는 일반 백미러 옆에 별도로 불룩거울을 달아 자동차 뒤쪽과 측면 사각지대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고안된 제품을 개발했다. 이 제품은 몸을 돌려 뒤차를 살펴야하는 불편함을 덜어줘 여성이나 노약자, 장애인에게도 큰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선진국에서 특히 인기가 많다(98/01).

한편 97년 3월의 편의증진법의 제정은 장애인 재활복지용품산업의 물꼬를 트고 있다. 이전에는 이 분야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기업들이 장애인 편의시설 이 확산되는 것에 맞추어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산업에 착수했다.

97년 3월에 LG 전선은 고무소재의 시각장애인 유도타일을 개발하고 본격 판매를 시작했다. 한편 97년 10월에는 LG산전이 국내업계 최초로 가정용 엘리베이터를 개발하고 11월부터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갔다. LG산전은 앞서 홈엘리베이터시장 진출을 위해 미국내 점유율 1위인 셀코사를 97년 초 인수했다.

이어 현대엘리베이터는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최장 3백m 길이의 계단을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는 쇠신 리프트를 개발했다. 이 제품은 기존의 로프식과는 달리 독일에서 개발된 특수 밧데리와 컴퓨터장비를 연결한 롤러구동방식을 채택해 70도의 높은 각도와 다양한 형태의 계단에도 설치가 가능하고 무선컨트롤이 가능해 시공과 설치가 간단하다. 현대엘리베이터는 길이가 34m에 이르는 국내 최장의 휠체어 리프트를 현대백화점 천호동점과 지하철 역사간의 연결통로에 설치하기도 했다.

VII. 편의시설과 장애인운동

1. 접근권 확보를 위한 장애인운동 – 도시철도 중심으로

제 1기 지하철은 장애인의 편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건설되었다. 이에 비해 2기 도시철도는 여전히 부족한 것 투성이기는 하나 장애인편의시설을 적극 수용한 편이다. 서울시 도시철도공사는 앞으로 현재 공사중인 도시철도 6호선 전구간과 7, 8호선 2단계 구간 및 기본설계중인 3기 지하철(9~12호선)의 모든 역에 엘리베이터와 휠체어리프트 등 장애인 승강시설을 대폭 확충하기로 하는 한편 신설 역사의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의 간격과 단차를 좁히기로 했다. 최근에는 역무원들에게 수화교육을 시키는 등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장애인들과 시민단체의 끊임없는 편의시설 확보운동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서울의 경우 장애인단체의 지하철 장애인 편의시설 확보 운동의 최초의 움직임의 시초는 과천선 개통(12월)을 앞둔 93년 3월 장애인복지 관련 60개 단체로 이루어진 장애인복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펼친 과천, 분당지하철역 장애인 편의시설 촉구였다.

공대위는 92년 6월 건설중이던 과천, 분당 지하철역 내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예산부족이라는 이유로 거부를 당했다. 공대위는 93년 3월 23일 다시 12월 개통 예정인 과천선의 한 구간인 금정역까지의 건설결과를 보았을 때 장애인 편의시설 확보가 극히 미흡함을 지적하며 편의시설 설치를 최대한 확보할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지하철공사측은 당초 철도청 남태령~금정~과천역에

이르는 지하철 4호선 연장선인 과천선에 엘리베이터, 휠체어리프트, 체어 메이트 등 장애인 승강설비를 종류별로 실정에 맞게 설치한다는 당초의 방침에서 크게 후퇴,⁹ 개역에 체어 메이트만 설치하기로 했다. 공대위는 이에 반발해 과천, 분당 지하철역 내 장애인편의시설을 최대한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철도청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 요청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또 다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93/03).

과천선은 2기 지하철 중 가장 먼저 완공되는 노선으로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었다.

같은 해 11월 10일에는 시민단체인 녹색교통운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 YMCA, 환경운동연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5개 시민운동단체로 구성된 시민을 위한 지하철 만들기 시민연대회의가 출범해 활동에 들어갔다(93/11/10). 지하철시민연대회의 결성은 지하철 편의시설 문제가 비단 장애인만의 문제만이 아님을 자각한 시민들의 최초의 움직임이었다는 의의를 갖는다. 연대회의는 출범과 동시에 조사평가팀을 구성, 93년 12월 10일까지 1개월간 지하철운영 및 제2기 도시철도 운영주체문제, 환경문제, 안전 및 서비스,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조사해 종합보고서를 작성하는 등의 활동을 가졌다.

97년 10월 17일 있었던 일산선의 백석역에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촉구하는 경기도 고양시 백석동 주민의 시위는 주민에 의한 자발적임 움직임이었다는 점에서 기억해 둘 만하다. 일산선 개통 이후 백석역을 이용하는 승객의 숫자가 하루 5천명에 달하며 백석역 주변에 1천1백24가구의 생활보호대상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전혀 설치되지 않았다. 특히 주엽역(1백2계단), 마두역(79계단) 등 계단이 많은 역에 조차도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에 따라 출퇴근 시민들의 불편은 물론, 발을 헛디며 부상을 입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노약자들은 경사가 가파른 계단을 위태위태하게 오르내리는 형편이었다.

주민들은 97년 8월 25일 장애인과 노약자들을 위해 백석역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것을 철도청에 요구했다. 그러나, 철도청은 회신을 통해 하루 승차인원이 10만 명이상 지하 3~4층의 심도가 깊은 경우에만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용객이 적은 백석역의 경우는 계단폭이 3.5m로 좁고 기술적으로 에스컬레이터 설치 경사구조로 바꾸기가 어렵다고 통보했다. 당국의 이와 같은 회신은 주민들의 분노를 촉발시켰다. 97년 10월 10일 주민들은 자체기술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시민의 편의를 무시하는 당국의 조치에 대한 서명운동을 펼쳤다.

한편 부산에서는 94년 6월 23일 부산지하철 개통식장에서, 장애인 100여명이 항의 시위를 벌이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들은 부산지체장애인연합회 소속 회원들로서 부산경찰청과 부산교통공단이 지하철 1호선 4단계 연장구간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은데다 지하철 통과구간인 낙동로의 횡단보도를 대부분 철폐해버린데 반발해 항의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또한 부산교통공단측이 지하철 1호선 4단계 구간 인 대티역과 신평역 사이의 5개 지하도에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출입시설이나 자동 계단시설 등을 전혀 갖춰놓지 않았다면 횡단보도를 철폐한 대신 장애인용 육교 등을 설치해달라고 요구를 했다.

인천에서도 94년 여름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인천시지부 장애인들의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요구 침묵시위(94/07/11)가 있었다. 이들 역시 경인선 전철 신설역사인 도원역 개통식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개통식 참석자들과 시민들에게 신설 도원역 및 간석역에 휠체어 경사로, 장애인용 전화부스, 화장실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전혀 돼 있지 않은데 항의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돌리며 2시간동안 침묵시위를 했다.

지하철 장애인 편의시설 확보운동에 있어 가장 주목할 만한 움직임은 대구지역 장애인들이 주도한 노인도 장애인도 탈 수 있는 지하철을 만들자는 시민단체협의회(이하 노장지협)의 활동이었다(94/01/19).

노장지협은 대구장애인단체협의회, 대구시사회복지관협회, 대구볼런티어센터, 지체장애인협회대구지부, 대구YMCA,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미문선교회등 16개 장애인 관련단체가 발기단체로, 영남지역장애인부모협의회, 참빛회, 대구대특수교육과 등 11개 단체가 참가단체로 참여하는 등 다양한 시민단체의 연대로 이루어졌다. 특히 노장지협의 성과는 앞으로의 장애인의 운동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97년 3월 대구지하철은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하기 위해 내외벽 공사를 끝낸 상태에서 중장비를 동원해 멀쩡한 계단과 벽을 허물은 작업을 했다(97/03/04 대구 매일). 지하철 1호선 계획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포함시키지 않았다가 노장지협 등 장애인관련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친 것이다. 예산낭비와 공사기간 지연을 초래하고 소음과 먼지 공해로 주민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따가운 눈총을 무릎쓰고 장애인 등의 편의를 위해 뒤늦게나마 계획을 변경한 것이 신선하게 다가온다. 장애인단체의 활발한 활동으로 대구시는 전국 지하철 중 가장 모범적인 장애인편의시설을 갖췄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대구시 지하철의 경우가 완벽한 성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계획단계에서부터 노장지협을 중심으로 펼쳐진 운동이 커다란 효과를 가져온 것은 분명하다. 이들의 주

장이 수용된 요인은 처음부터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시민 전체의 문제로 이끌어 낸 것과 단발적인 운동에 그치지 않고 고비 때마다 적절한 대응을 한 데 있다. 이와 같은 일관성 있는 대응이 대구시로부터 존중을 이끌어 냈고 그동안 사문화된 것으로 알려진 95년에 발효된 편의시설 설치규칙을 준수하도록 의무감을 부여했다고 볼 수 있다.

2. 장애를 가진 대학생 편의시설 확보운동

1994년 장애인 대학특례입학제도가 도입되면서 각 대학별로 장애인들이 대거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학내 장애인 편의시설 문제가 대두되었다. 학내 편의시설 실태조사에 의하면 대학내 장애인 편의시설이 거의 설치되지 않아 일반 시설보다도 더 열악한 형편이었다.

이에 따라 장애인 대학생 스스로 학내 편의시설을 개선하자는 자체 움직임이 일어났다. 95년 12월 14일 연세대 장애인 학생들은 학내 편의시설 개선운동 모임인 게르니카를 결성했다. 게르니카는 이듬해 연세대 재학중인 시각장애인 허세봉 씨가 도서관에 점자책이 없는 등 편의시설 부족으로 견디지 못하고 한달 만에 휴학한 것을 계기로 5월부터 학내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요구 서명운동을 펼쳤다. 이어 게르니카는 5월 18일 학교측에 편의시설 촉구 10개항을 발표했다. 이들이 밝힌 10개항은 아래와 같다. △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강의실 마련, △ 도서관의 점자도서 구비 및 통로변경, △ 도로 표지판 등 안내체제 구비, △ 교수, 강사, 조교들의 인식 개선, △ 교내 차도와 인도, △ 각 건물 동선에 점자 정보블록 설치, △ 각 계단 양쪽에 점자정보를 넣은 등근 손잡이 설치, △ 고층 강의실 내 승강기 설치, △ 휠체어를 사용하는 학우들이 누워 쉴 수 있는 휴게실 마련, △ 장애인 대학특례입학 대책위원회 활성화, △ 장애학우 지원통합 자원활동시스템 구축 요구.

연세대의 편의시설 개선운동과 더불어 연세대 총학생회가 펼치는 장애학우 복지 증진 운동도 관심을 끌고 있다. 연대 총학생회는 연대 장애학생 모임인 게르니카의 제안을 받아들여 국내 최초로 장애인용 교내지도를 수록한 데 이어 이번에는 건물과 강의실과 편의시설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표지판(점자이정표)을 보도블록, 계단, 벽 등에 부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대학측도 장애인 학생들이 불편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물구조를 개선하는 작업을 장기 과제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사회문제에만 집중된 학생운동이 장애인 등 소외계층으로까지 영역이 넓혀진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같은 해 9월에는 대학 연합으로 대학생 교육권 확보 운동이 펼쳐졌다. 즉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 총학생회, 전국지체장애인 대학생연합회 등 33개 대학 학생회 및 장애인 대학생 동아리 연대가 결성돼 각 대학을 돌며 장애인 대학생 교육권 확보를 위한 입법 청원운동이 펼쳐진 것이다. 이들은 9월 2일부터 4일까지 건국대와 이화여대 등에서 6천여명의 서명을 확보했고 17일까지 연세대, 서강대, 숭실대, 대학로, 고려대 등에서 3만명을 목표로 한 서명운동을 펼쳤다. 이와 함께 고등교육에 있어 장애인 차별금지에 관한 시행령(가칭) 제정 촉구에 함께 나섰다. 시행령의 골격은 △ 대학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지원 △ 국·공립대학 장애인 특례입학 의무화 △ 대학종합평가 항목에 장애인 편의시설과 수업지원 프로그램 추가 △ 장애인 학생 교육방안에 관한 장·단기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등이었다. 서명운동과 함께 장애를 가진 대학생의 하루생활을 묘사한 '천국에는 계단이 없다' 사진전이 열리기도 했다.

97년 4월말에는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단국대 등 4개 대학 장애인, 장애인봉사서클 회원, 특수교육학과 학생으로 구성된 '장애인 대학생의 정당한 교육권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동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지원, 대학내 장애인전담기구 설치 등 96년 요구안을 이행토록 교육부와 각 대학에 공동 촉구했다. 이들은 5월부터 각 대학의 장애인 교육실태를 고발하는 장애인 교육환경백서 발간을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현장실사를 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장애인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전국적 장애를 가진 대학생 조직의 전단계로 각 대학에 장애인 특별전형 입학생들이 주축이 되는 장애인학생협의체 구성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3. 저상버스 확대도입 촉구운동

96년 6월 23일 전남대 정봉현 교수는 국내에도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광주염주체육관에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모임이 마련한 심포지엄에서 정 교수는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환경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대중교통을 정상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노인·어린이들을 위해 출입구 바닥을 낮추거나 리프트를 설치한 시내버스를 도입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방송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문자정보판을 확충해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국을 선두로 한 선진외국에서는 1980년대부터 저상식 버스가 보편화되고 있다.

이들 나라에서는 저상식 버스는 장애인만을 위한 특수차량이 아니다. 고령화사회를 맞아 노인들이 승객의 대다수를 차지함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었다. 저상식 버스는 길에서 걷듯이 탈 수 있어 휠체어 사용자는 물론 일반 승객들에게도 편한 교통수단 이면서 승차시간을 단축하는데 훨씬 효과적이라는 조사결과도 있다.

97년 7월 21일 서울시는 장애인이 승차하기 쉽도록 버스 밑바닥 높이를 78cm에서 38cm로 크게 낮춘 저상(底床)버스를 도입을 발표했다. 공영버스 100대를 도입하기로 하고 공영버스 노선에 저상버스 2대를 시범 운영한 뒤 2000년에 민간버스에도 확대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저상버스를 단 두 대만 채택하려는 서울시의 계획에 대해 장애인 편의시설 촉진시민모임과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 등 장애인 단체들은 연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저상버스 기술의 미비를 들어 난색을 표명했지만 그러나, 장애인들은 대우중공업과 현대자동차가 각각 저상버스 개발에 성공(96/07/31)한 사실에 비추어 설득력이 없다며 반발을 했다. 더군다나 98년 4월 실시하는 편의증진법은 대중교통수단에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결국 서울시는 97년 7월 30일 시내버스개혁 종합대책 확정 발표를 통해 98년 저상버스 5대, 99년 10대를 시범 도입키로 계획을 수정했다.

4. 보행약자를 위한 시민단체의 보행권 운동

시민단체의 보행권 운동도 편의시설 설치 운동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장애인 계가 주시해야 할 대목이다. 보행권 운동의 핵심은 노약자, 장애인, 어린이 보호문제와 닿아 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의 보행권 운동은 이미 여러 해 전부터 시작되었다.

93년 6월 20일 녹색교통운동이 중심으로 해서 펼친 '보행권 신장을 위한 도심지 시민 걷기대회와 '보행자 권리선언'이 그 최초의 움직임이었다. 96년 5월 9일에는 시민교통환경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여러 시민단체가 연합해 '걷고 싶은 서울 만들기 운동본부'를 결성하기도 했다. 특히 이 모임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를 추진해 97년 1월 15일 서울시 의회를 거쳐 공포·시행되기도 했다.

97년 들어 대전의제 21 추진위원회는 노약자, 장애인, 어린이의 통행을 우선토록 하는 교통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보행자 현장'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03/05 경향).

대구 경실련도 보행자 권리보호기구인 교통광장을 설립하고(3/25), 교통약자 보호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교통광장은 횡단보도와 신호등 체계의 문제점, 자전거전용 도로의 실태와 문제점, 장애인용 교통시설의 현황과 문제점 등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만들어 대구시 등 관계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 모임은 보행권을 생활권으로 규정하고 보행자들의 권리확보를 위한 모든 사업을 별일 계획으로 있다.

이들 시민단체들이 장애인의 보행권도 함께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장애인 단체들도 이들 시민단체들과 연대를 통해서 문제해결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난 97년 2월 26일 시민교통환경센터를 중심으로 결성된 '걷고 싶은 서울만들기 운동본부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시의원 · 시민단체 대표 ·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이날 모임에서 '걷고 싶은 서울 만들기 운동본부'와 조례제정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보행권 보장을 위한 조례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어 2월 27일에는 '제1차 걷고 싶은 서울 만들기 포럼'을 열었다. 이 포럼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차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90~94년까지 5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2만9천77명 중 54.2%인 1만5천745명은 길을 건너다 숨진 사람이라는 것이다. 도시개발 사업으로 보도가 크게 감소됐다는 지적도 있었다. 앞으로 걷고 싶은 서울만들기운동본부는 (동아 02/27) △ 어린이에게 안전한 거리 △ 장애인과 노인에게 편안한 거리 △ 대중교통이용 시민에게 편리한 거리 △ 자연이 있는 거리 △ 문화를 창조하는 거리를 주창하며 각종 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지구의 날을 보행자의 날로 제정할 예정이다(한겨레 02/28).

부록

장애인 · 노인 ·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장애인 · 노인 ·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장애인 · 노인 ·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장애인 · 노인 ·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정 1997. 4. 10. 법률 제5332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장애인 · 노인 · 임산부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라 함은 장애인 · 노인 · 임산부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2. "편의시설"이라 함은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시설주"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당해 대상 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4. "시설주관기관"이라 함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지도와 감독을 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5.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및 그 부속물과 지하도로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한 건설교통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하도로를 말한다.
6. "공원"이라 함은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및 동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과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

원 및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을 말한다.

7.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및 시설을 말한다.
8. “공동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9. “교통수단”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철도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 및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10. “통신시설”이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 설비와 우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우편물 등 통신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칙)

시설주는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 (접근권)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동등하게 이용하고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아니한 편의시설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 (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도로
2. 공원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4. 공동주택
5. 교통수단
6. 통신시설
7. 기타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 (시설주의 의무)

- ① 시설주는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을 변경하는 때에는 장애인등이 항상 대상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8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② 시설주는 장애인등이 편의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이 설치된 곳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편의시설에 관한 지도·감독)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시설주관기관은 그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실태조사)

- ①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 등을 위하여 편의시설

-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의 실시시기, 실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③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시설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설치계획의 수립 · 시행 및 보고)

- ①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실태 및 정비계획
 2. 대상시설의 건축 · 대수선 · 용도변경의 경우 또는 교통수단 구입 등의 경우에 있어서의 편의시설 설치계획
 3. 대상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홍보
 4.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 설치계획과 그 시행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계획 등을 종합하여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국가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3조 (설치의 지원)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지원과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② 법인 및 개인이 이 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금액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 등 조세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한다.

제14조 (연구개발의 촉진 등)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편의시설에 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 설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편의시설 상세 표준도를 작성하여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에 대한 편의시설 상세표준도는 해당 편의시설에 관하여 건축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로 본다.

제15조 (적용의 완화)

- ① 시설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8조제2항의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세부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시설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 이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의 설치가 구조적으로 곤란한 경우
 2. 세부기준에 적합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안전관리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대상시설의 용도 및 주변여건에 비추어 세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 장애인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시설이용상의 편의제공)

- ① 장애인등의 이용이 많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휠체어 · 점역안내책자 등을 비치하여 장애인등이 당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휠체어 · 점역안내책자 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휠체어 · 점역안내책자 등 비치하여야 할 용품의 종류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휠체어 · 점역안내책자 등의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감안하여 실비로 할 수 있다.

제17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 ①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운전자가 장애인이거나 장애인을 승차시키기 위한 자동차임을 식별하는 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③ 누구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식이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의 설치)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9조 (기금의 재원)

-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 2.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징수액의 100분의 50
 - 3. 기금의 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
- ② 정부 외의 자가 기금에 출연 또는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지방세법 기타 조세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한다.

제20조 (기금의 용도)

-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 1. 편의시설 상세표준도의 작성 등 연구개발사업
 - 2. 편의시설 설치 등과 관련한 기술지원사업
 - 3. 편의시설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 4.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보조사업
 - 5.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편의시설 설치촉진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1조 (기금의 운용·관리)

- ① 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운용·관리하되, 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의 기금에 대하여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5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조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에게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편의시설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세부기준에의 적합성 여부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3조 (시정명령 등)

- ① 시설주관기관은 대상시설이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주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주관기관에게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등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설주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4조 (청문)

시설주관기관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시설주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시설주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 (벌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로서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27조 (과태료)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휠체어·점역안내책자 등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로서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사유없이 제11조제3항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한 자
- ②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애인 자동차표식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주관기관이 부과·징수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당해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28조 (이행강제금)

- ① 시설주관기관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주에 대하여 편의시설 설치비용 등을 고려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위반정도에 따른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④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 및 수납기관·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행하여야 한다.

⑤ 시설주관기관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당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⑥ 시설주관기관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⑦ 제27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이행강제금의 징수 및 이의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징수액의 100분의 50은 부과권자가 사용하되, 다음 각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1. 편의시설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2.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용자 또는 보조사업
3.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등의 생활편의증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⑨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이행강제금의 부과권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강제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9조 (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 ①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건축허가신청 등 대상시설의 설치·변경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시공중인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② 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대상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상 7년 내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아니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시설주에 대하여 제23조·제25조 및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 ① 기금관리기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122.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② 장애인복지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7조제3호를 삭제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15,675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건물 및 공중이용 시설의 정의)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및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물 및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3호의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의한 건물 및 시설 중 기숙사·근린생활시설·근린공공시설·종교시설·노유자시설·의료시설·교육연구시설·운동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판매시설·관람집회시설·전시시설·공장·운수시설·자동차관련시설·방송·통신시설·장례식장·관광휴게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
2. 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 역사, 고속철도건설촉진법에 의한 고속철도 역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1조의 2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류소와 도로교통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제3조(대상시설) 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편의시설의 종류)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 (대상시설의 변경)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을 변경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도로를 개축 또는 수선하는 때
2. 자연공원법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계획과 도시공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조성계획의 변경결정에 의하여 별표 1에 의한 공공 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공원시설을 변경하는 때
3. 공공건물 · 공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을 증축 · 개축 · 재축 · 이전 ·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하는 때

제6조 (설치계획 및 시행실적의 제출) ①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주관기관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계획의 시행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주관기관의 구체적 범위, 설치계획, 시행실적의 제출시기 · 제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제7조 (적용의 완화) ① 법 제15조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로서의 역사적인 가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과학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세부기준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
- ②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기준을 승인받고자 하는 자는 승인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시설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시설주관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적용의 완화여부 및 범위를 결정하고 지체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시설주관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의 완화여부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편의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에 관한 전문가 3인 이상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8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 · 운용하여야 한다.

1. 은행법 기타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탁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 은행법 기타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 ② 기금은 현금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계리한다.
- ③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한국은행에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 (기금의 회계기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의 지출원인 행위와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의 출납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 ②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중 재무관 및 세입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관 및 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준용한다.

제10조 (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의 관리 ·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심의회(이하 “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보건복지부 · 예산청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2. 편의시설 · 장애인복지 및 기금의 관리 · 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④ 기금운영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기타 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

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다른 법령의 준용)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예산회계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12조 (시정명령) 시설주관기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할 때에는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기타 기술적인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 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시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 시설주관기관은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시설주관기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14조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법 제8조 및 법 제 15조의 규정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인건비 및 자재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 법 제8조 및 법 제 15조의 규정에 적합한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계단의 유효바닥면적 등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 : 지방세법에 의하여 당해 대상시설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

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4. 기타 숙박시설의 장애인용 객실 등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하여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해당 숙박시설에 확보되어야 하는 장애인용 객실 수에 상당하는 일반객실의 연평균수입금액 등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5. 법 제8조 및 법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편의시설을 유지·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건비 및 자재비의 산정기준,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효바닥면적 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범위와 동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장애인용 객실 등 편의시설의 범위 및 금액산정기준 기타 이행강제금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1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이의절차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5조 (이행강제금 징수액의 사용절차) ① 법 제28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주관기관은 징수한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50을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관기관은 징수한 이행강제금 중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계정에 납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예산회계법 또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에 편성하고 수납·지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최초의 편의시설설치계획의 기준연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립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설치계획의 기준연도는 2000년으로 한다.

제3조 (기존 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법 시행전에 설치된 대상 시설중 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 · 설치기간 및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② 건축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3항중 “장애인복지법령”을 “장애인 · 노인 ·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로 한다.

③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주택단지 안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관련 편의시설은 장애인 · 노인 ·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3조중 “장애인복지법령”을 장애인 · 노인 ·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로 한다.

④ 주차장법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란 제10호 중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장애인 · 노인 ·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로 한다.

【별표 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제3조 관련)

1. 도로

2. 공원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 시설

가. 기숙사(제3호 사목의 교육연구시설 및 동호 하목의 공장에 부설된 시설로서 30인 이상 기숙하는 것에 한한다)

나. 근린생활시설

(1) 슈퍼마켓 · 일용품(식품 · 잡화 · 의류 · 완구 · 서적 · 건축자재 · 의약품류 등)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2) 일반 음식점 · 휴게음식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일반목욕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4) 안마시술소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다. 근린공공시설

(1) 읍 · 면 · 동사무소, 경찰관파출소, 우체국, 전신전화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의료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시설

(2) 대피소

(3) 공중화장실

라. 종교시설 : 교회 · 성당 · 사찰 · 기도원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마. 노유자시설

(1) 장애인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2) 노인시설 : 노인복지시설 · 경로당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3) 아동시설 : 아동복지시설 · 보육시설 · 유치원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4)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바. 의료시설

(1) 병원 : 종합병원 · 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 정신병원 · 요양소

(2) 격리병원 : 전염병원 · 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사. 교육연구시설

(1) 학교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전문대학 · 대학 · 대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2) 교육원 · 직업훈련소 · 학원(자동차학원과 무도학원은 제외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도서관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아. 운동시설(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1)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2) 운동장(육상 · 구기 · 볼링 · 수영 · 스케이트 · 로울러스케이트 · 승마 · 사격 · 궁도 · 골프 등의 운동장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3) 운동장에 부수되는 건축물

자. 업무시설

(1) 공공업무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로서 근린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

(2) 일반 업무시설 : 금융업소 · 사무소 · 신문사 · 오피스텔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차. 숙박시설

(1) 일반숙박시설 : 호텔 · 여관(객실수가 30실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2) 관광숙박시설 : 관광호텔 · 가족호텔 · 국민호텔 · 해상관광호텔 · 휴양콘도 미니엄 · 한국전통호텔

카. 판매시설 : 도 · 소매점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타. 관람집회시설

(1) 공연장 : 극장 · 영화관 · 연예장 · 음악당 · 서어커스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집회장 : 회의장 · 공회장 · 예식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관람장 : 운동경기관람장(운동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경마장 · 자동차경주장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파. 전시시설

(1) 전시장 : 박물관 · 미술관 · 과학관 · 기념관 · 산업전시장 · 박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동 · 식물원 : 동물원 · 식물원 · 수족관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하. 공장 : 물품의 제조 · 가공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령에 의하여 장애인고용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시설

거. 자동차관련시설

(1) 주차장

(2) 운전학원

너. 방송통신시설 : 방송국 · 전신전화국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더. 장례식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라. 관광휴게시설

(1) 야외음악당 · 야외극장 · 어린이회관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휴게소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며. 청소년수련시설

- (1) 생활권수련시설 : 청소년수련원 · 청소년수련관 · 청소년수련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 (2) 자연권수련시설 : 청소년수련마을 · 청소년수련의 집 · 청소년야영장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3) 유스호스텔

버. 교통시설

- (1)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 (2) 철도역사

- (3) 도시철도역사

- (4) 고속철도역사

- (5) 공항시설(여객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

- (6)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무역항에 설치되어 있는 항만시설
(여객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 및 종합여객시설

- (7) 정류소

- (8) 교통신호기

4. 공동주택

가. 아파트

- 나. 연립주택(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주택에 한한다)

- 다. 다세대주택(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주택에 한한다)

5. 교통수단

- 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내버스운송사업과 시외버스 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나. 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차량에 한한다)

- 다.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

6. 통신시설

가. 공중전화

나. 우체통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 설치기준(제4조 관련)

1. 도로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나. 장애인등의 통행 이 가능한 보도	(1) 보도는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 폭 · 기울기 · 경계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 여야 한다. (2) 보도의 중앙에는 시각장애인의 보행기준선이 되는 점자블록 을 설치할 수 있다.
나. 장애인등의 통행 이 가능한 횡단 보도	(1)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은 턱낮추기를 하거나 연석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횡단보도에 연접한 양쪽 보도와 횡단 도중의 일시 대기용 안 전지대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장애인등의 통행 이 가능한 지하 도 및 육교 등	(1) 주변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하도 및 육교는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지하도 및 육교의 출입구 부근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지하도에 설치하는 방향표지안내도 · 구조배치안내도 및 피 난안내도 등에는 시각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점자를 병기 하거나 음성안내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장애인 전용 주 차구역	도로에 연접 또는 부설하는 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대수에 따라 구분 · 설치하여야 한다.
마. 장애인등의 이용 이 가능한 휴게 시설 및 지하도 상가	도로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휴게시설 및 지하도상가에 대하여는 그 용도 · 규모에 따라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설치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2. 공원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가.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공원 외부에서 내부로 이르는 출입구는 주출입구를 포함하여 적어도 하나 이상을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	공원시설(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에 접근할 수 있는 공원 안의 보도 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장애인용 화장실	화장실은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점자블록	공원과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시각장애인 유도및 안내설비	시각장애인의 공원이용 편의를 위하여 공원의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촉지도식 안내판·음성안내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호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바.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매표소(장애인등이 이용이 가능한 자동발매기를 설치한 경우와 시설관리자 등으로부터 별도의 상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판매기 및 음료대는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형태·규격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장소에 2곳 또는 2대 이상을 각각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중 1곳 또는 1대만을 장애인 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사.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공원시설	(1) 자연공원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 및 도시공원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에 대하여는 공원시설의 종류에 따라 제1호·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통신시설의 설치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2) 공원의 효용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일반사항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가) 대상시설 외부에서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는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접근로를 (가)의 주출입구에 연결하여 시공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에 연결하여 접근로를 설치할 수 있다.
(2)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가)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며, 산정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나) 자동차관련시설중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인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3)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가)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가)의 주출입구의 높이차이를 없애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의 높이 차이를 없앨 수 있다.
(4)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등	(가)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건축물 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구(문) 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교통시설의 승강장에 이르는 개찰구 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너비 등을 고려하여 편리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5)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등	<p>(가) 복도는 장애인등이 통행이 가능하도록 유효폭,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p> <p>(나) 교통시설의 주출입구로부터 대합실 및 승강장에 이르는 통로는 유효폭,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p>
(6)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	<p>(가) 장애인등이 건축물의 1개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 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1층에만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나)(가)의 건축물 중 6층 이상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종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근린공공시설, 노유자시설 중 장애인시설 및 노인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및 도서관, 공공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관람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관람장, 전시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청소년수련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p> <p>(다) 층수가 2층 이상인 교통시설에는 장애인등이 주출입구로부터 대합실 및 승강장이 있는 층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이상 설치하여야 한다.</p> <p>(라) 교통시설의 승강장은 장애인등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기울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차량과의 간격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p> <p>(마) 교통시설 중 택시승강장과 차도의 경계에 높이차이가 있는 때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연석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p>
(7) 장애인용 화장실	화장실은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8)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	욕실은 1개실 이상을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9)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샤워실 및 탈의실	샤워실 및 탈의실은 1개실 이상을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0) 점자블록	<p>(가)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p> <p>(나) 교통시설의 주출입구로부터 매표소·대합실 및 승강장에 이르는 통로(시설관리자 등으로부터 별도의 상시안내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p> <p>(다) 교통시설 중 버스정류장 및 택시승강자의 승·하차 지점에는 시각장애인의 위치를 감지할 수 있도록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p>
(11) 시각 및 청각장애인 유도·안내설비	<p>(가) 시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음성안내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호장치를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p> <p>(나) 버스정류장의 노선안내작동기에는 시각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음성안내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p> <p>(다) 공원·근린공공시설·장애인시설·교육연구시설·공공업무시설·터미널 및 역사의 주변, 시각장애인 밀집거주지역 등 시각장애인의 이용이 많거나 타당성이 있는 설치요구가 있는 곳에는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p> <p>(라) 청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이 많은 곳에는 전자문자안내판 또는 기타 전자문자안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p>
(12) 시각 및 청각장애인 등이 위급한 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및 시각장애인용 경보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p>(가) 시각 및 청각장애인 등이 위급한 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및 시각장애인용 경보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p> <p>(나) 교통시설의 승강장에서 장애인 등이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난간 등 추락방지설비를 갖추어야 한다.</p>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13)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기숙사 및 숙박시설 등의 전체 침실수 또는 객실의 1퍼센트 이상 (숙박시설은 0.5퍼센트 이상)은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 하되, 산정된 객실 또는 침실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실로 본다.
(14)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	관람장 및 도서관 등의 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 수의 1퍼센트 이상(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 수가 2천석 이상인 경우에는 20석 이상)은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산정된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석으로 본다.
(15)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 또는 작업대	읍·면·동사무소 및 장애인시설 등의 접수대 또는 작업대는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형태·규격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장소에 각각 2대 이상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중 1대만을 장애인 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16)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교통시설 등의 매표소(장애인등이 이용이 가능한 자동발매기를 설치한 경우와 시설관리자 등으로부터 별도의 상시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판매기 및 음료대는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형태·규격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장소에 2곳 또는 2대 이상을 각각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중 1곳 또는 1대만을 장애인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편의시설 대상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비고	
	주점 출근 일로 구 장주 애자 인구 전역 용	주로 출이 입차 구이 제 거	출 입 구 (문)	복 도	계 단 또 는 승 강 기	화장실 대 변 기	욕 실 세 면 기	샤 워 실 탈 의 실	정 자 차 별 록 노 내 보 단 및 침 비	객침 실	관원 접차 접 수입 식식 대내	매관 접차 표매 소기 음 료 대	
기숙사	의무	권장	의무	의무	권장	의무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의무	· 기숙사가 2동이상 의 건축물로 이루어 져 있는 경우 장애인 용 침실이 설치된 동 에만 적용가능. 다만, 장애인용 침실수는 전체 건축물을 기준 으로 산정하며 일반 침실의 경우 출입구 (문)는 권장사항임.
그린생활시설	수퍼마켓·일용 품등의 소매점· 일반음식점·휴 게음식점·일반 목욕장	의무	권장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그린공공시설	안마시술소	의무	권장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그린공공시설	읍·면·동사무소, 경찰관과출 소, 우체국, 전신 전화국, 보건소, 의료보험 조합 기타 이와 유사 한 용도의 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공공시설	공공도서관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공공시설	대피소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공공시설	공중화장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종교시설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노유자시설	장애인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 장애종별에 따 라 설치기준 완화 가능
노유자시설	노인시설(경로 당 제외)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 당해용도에 쓰 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 미터미만인 경우 복도·계단 또는 승강기는 권장사 항임
노유자시설	아동시설, 기타 사회 복지시설 (경로당 포함)	의무	권장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편의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비고		
대상시설	주점 출근 입로 구	장주 예차 인구 전용	주높이 출이 입차 구이 제거	출입구 (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 기	화장실 대 변 기	욕실 소 변 기	사 워 실 탈 의 실	점 자 불 특 및 설 비	유인 도내 보난 경피 객침 실실 접속 관열 수업 대내	매만 표매 소기 음 료 대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권 장	권 장	권 장	권 장	
교육연 구시설	학교(장애인특수학교 제외)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권 장	권 장	권 장	권 장	· 장애인 학생을 위한 교실·화장실을 1층에 배치할 경우 계단 또는 승강기는 권장사항임
	장애인특수학교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권 장	의 무	의 무	의 무	· 장애종별에 따라 설치기준 완화 가능
	교육원·직업훈련소·학원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권 장	권 장	권 장	권 장	·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복도·계단 또는 승강기는 권장사항임
	도서관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권 장	권 장	의 무	권 장	
업무시설	운동시설	의 무	권 장	의 무	의 무	권 장	권 장	권 장	권 장	권 장	권 장	권 장	권 장	
	공동업무시설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 유도 및 안내설비는 민원실 등 이용이 많은 곳외에는 권장사항임
	일반업무시설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권 장	권 장	의 무	권 장	·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복도·계단 또는 승강기는 권장사항임
	숙박시설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권 장	의 무	권 장	권 장	
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여관 제외), 관광숙박시설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권 장	의 무	권 장	권 장	
	여관	의 무	권 장	의 무	의 무	권 장	권 장	의 무	권 장	권 장	의 무	권 장	권 장	· 일반침실의 경우 출입구(문)는 권장사항임

편의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비고		
대상시설	주점 출근 입로 구	장주 예차 인구 전용	주높이 출이 입차 구이 제거	출입구 (문)	복도	계 단 또 는 승 강 기	화장실 대 변 기	욕 실 소 변 기	사 워 실 탈 의 실	점 자 불 특 및 설 비	유 안 도 내 보 난 경 피 객 침 실 접 속 관 열 수 업 대 내	매 만 표 매 소 기 음 료 대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권 장	권 장	권 장		
판매시설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권 장	권 장	권 장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권 장	권 장	권 장		
관람집회시설	공연장, 관람장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권 장	권 장	권 장	권 장	·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복도·계단 또는 승강기는 권장사항임
	집회장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권 장	권 장	권 장		·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복도·계단 또는 승강기는 권장사항임
전시시설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권 장	권 장	권 장		·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복도·계단 또는 승강기는 권장사항임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권 장	권 장	권 장		·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복도·계단 또는 승강기는 권장사항임
공장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권 장	권 장	권 장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권 장	권 장	권 장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의 무	의 무	의 무						권 장				·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복도·계단 또는 승강기는 권장사항임 · 시각장애인용 편의시설은 권장사항임
	운전학원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권 장	권 장	권 장		
방송통신시설	방송국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권 장	권 장	권 장		
	전신전화국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권 장	권 장	권 장		

편의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비고	
	주입구	장주출근구	주높이	출입구(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욕실	사원실	점자블록	유안정	경피보단 및 밀리	객찰설	관찰창	접작수업대	대판표매소기	용료대
대상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점자블록	유안정	경피보단 및 밀리	객찰설	관찰창	접작수업대	대판표매소기	용료대
장례식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관광휴게시설	아외음악당, 아외극장, 어린이회관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휴게소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청소년 수련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교통시설	여객자동차 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철도역사, 도시철도 역사, 고속철도 역사, 공항시설, 항만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정류소						의무			의무	권장						
	교통신호기									의무							

4. 공동주택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가.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1) 대상시설 외부에서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는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접근로를 (1)의 주출입구에 연결하여 시공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들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에 연결하여 접근로를 설치할 수 있다.
나.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1)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훨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1)의 주출입구의 높이차이를 없애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의 높이차이를 없앨 수 있다.
다.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1) 건축물의 주출입구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장애인 전용주택의 세대내 출입문은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라.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복도는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유효폭·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마.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훨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아파트는 장애인등이 건축물의 1개 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훨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바. 장애인용 화장실 및 욕실	장애인 전용주택의 화장실 및 욕실은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사. 점자블록	시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전용주택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할 수 있다.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아. 시각 및 청각장애인 · 경보 · 피난설비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전용주택에는 위급한 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 · 통로유도등 및 시각장애인용 경보설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자.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부대 시설 및 복리시설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단지 안의 관리사무소 · 경로당 · 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 · 조산소 · 약국 · 일반목욕장 · 생활편익시설 또는 사회복지관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3호 가목 (1), (3) 내지 (7)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당해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의 총 세대수가 300 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택건설촉진법 제3호 제6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 시설 및 복리시설 중 (1)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제외한 시설(별표 1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물 · 공중이용시설 및 통신시설의 설치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5. 교통수단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가.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버스	(1) 버스 안에는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정류장 등에 관한 자동안내 방송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승 · 하차할 수 있도록 승강구 제1단의 높이는 가급적 낮추어야 하며, 휠체어사용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는 승강설비를 갖출 수 있다. (3) 승강구 부근에 장애인 등을 위한 좌석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고속버스 등 좌석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정류장 등을 알려주는 전자문자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나.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철도차량	(1) 철도차량에는 휠체어사용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도록 승강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승강장에 별도의 휠체어승강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휠체어사용자를 위하여 열차편성당 객차 내 휠체어를 고정시킬 수 있는 승차공간을 확보하거나 좌석을 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3) 장애인용 승차공간 또는 좌석이 설치된 차량의 화장실에는 장애인용 대변기를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4) 시각 및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정류장 등에 관한 자동안내방송장치 및 전자문자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도시철도차량	(1) 도시철도차량에는 장애인등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위치에 장애인 등을 위한 좌석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시각 및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정류장 등에 관한 자동안내방송장치 및 전자문자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6. 통신시설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가.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공중전화	(1)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에 공중전화를 설치하거나, 장애인의 타당성 있는 설치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전화기를 1대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변 소음도가 75 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장애인등의 이용이 많은 곳에는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표시전화기, 큰문자버튼전화기, 음량증폭전화기, 보청기 호환성 전화기, 골도전화기(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두개골에 진동을 주는 방법으로 통화가 가능한 전화기를 말한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나.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우체통	우체통은 장애인등의 접근 및 이용이 용이하도록 위치 및 구조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3】

정비대상시설 및 설치기준(부칙 제3조 관련)

1. 정비대상시설과 정비기한

정비대상시설	정비기한	
	법 시행후 2년이내	법 시행후 7년 이내
횡단보도	<input checked="" type="radio"/>	
읍·면·동사무소, 경찰관파출소,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input checked="" type="radio"/>	
5개 이상의 대변기를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input checked="" type="radio"/>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경로당 제외)	<input checked="" type="radio"/>	
종합병원	<input checked="" type="radio"/>	
장애인특수학교	<input checked="" type="radio"/>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input checked="" type="radio"/>	
여객자동차터미널, 공항시설(여객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함), 무역항에 설치되어 있는 항만시설(여객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함) 및 종합여객시설	<input checked="" type="radio"/>	
철도역사(통일호 이상의 열차가 정차하는 역에 한함), 도시철도역사		<input checked="" type="radio"/>

2.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은 [별표 2]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8조제2항의 세부기준에 의한 편의시설의 설치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장애인의 통행 또는 이용에 편리한 접근로·출입구(문)·복도·계단·또는 장애인용 화장실의 설치기준 중 유효폭·기울기 및 유효바닥면적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도시철도 역사에는 해당 편의시설의 설치에 갈음하여 계단을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 가. 대상시설 외부에서 주출입구로 이르는 접근로의 유효폭 및 기울기 등의 확보
가 지형상 곤란하여 휠체어사용자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 나.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는 출입구(문)·복도·계단 또는
장애인용 화장실의 유효폭 또는 유효바닥면적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 다. 도시철도역사에 장애인용 승강기·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휠체어리프트 또
는 경사로의 설치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 64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 ①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및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
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의 구
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에 관한 신제품의 개발·신기술의 도입 기타 장애
인등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험적용을 할 필요가 있거나 이에 준
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부기준에 대한 특례 또는 세부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조(안내표시기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의 안내표시기준은 별
표 2와 같다.

제4조(실태조사의 실시시기 등) ①시설주관기관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2월 말일을 기준일로 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편의
시설의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에 의
하여야 한다.

②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신청)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설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상시설의 구조·용도 등을 알 수 있는 설계도서
2. 완화된 세부기준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계도서
3. 기타 대상시설의 주변여건을 알 수 있는 서류 등 세부기준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를 설명하는 서류 및 도서

제6조(비치용품의 종류 등)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휠체어·점역안내책자 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하여야 할 용품의 종류는 별표 3과 같다.

제7조(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 ① 영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 및 영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관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이행강제금처분대장을 비치하고,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징수된 이행강제금의 운용계획 등) ① 시설주관기관은 법 제28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2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의 이행강제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관기관은 전년도의 이행강제금부과·징수실적 및 사용실적을 매년 3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장애인편의시설및설비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 한다.

③(최초의 전수조사의 기준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전수조사의 기준일은 1998년 12월 말일로 한다.

④(공공건물 등의 장애인용 비치용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용 비치용품을 갖추어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비치용품을 갖추어야 한다.

⑤(편의시설의 세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장애인편의 시설및설비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을 적용하여 건축허가신청 등 대상시설의 설치·변경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시공중인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세부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장애인편의시설및설비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장애인편의시설및설비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보다 이 규칙에 의한 편의시설의 세부기준이 완화된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 ·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 및 접근로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1) 휠체어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보도 또는 접근로(이하 “보도등”이라 한다)의 유효폭은 1.2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휠체어사용자가 다른 휠체어 또는 유모차 등과 교행할 수 있도록 50미터마다 1.5미터×1.5미터이상의 교행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3) 경사진 보도등이 연속될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가 휴식할 수 있도록 30미터마다 1.5미터×1.5미터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나. 기울기

보도등의 기울기는 18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다. 경계

(1) 보도등과 차도의 경계부분에는 연석 · 올타리 기타 차도와 분리할 수 있는 공작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와 구별하기 위한 공작물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하여야 한다.

(2) 연석의 높이는 6센티미터이상 15센티미터이하로 할 수 있으며, 색상은 보도 등의 바닥재색상과 달리 설치할 수 있다.

라. 재질과 마감

(1) 보도등의 바닥표면은 장애인등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2) 보도블록 등으로 보도등을 포장하는 경우에는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면이 평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장애인등이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덮개를 설치하되, 그 표면은 보도등과 동일한 높이가 되도록 하고 덮개에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간격이 2센티미터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보행장애물

(1) 보도등에 가로등·전주·간판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등의 통행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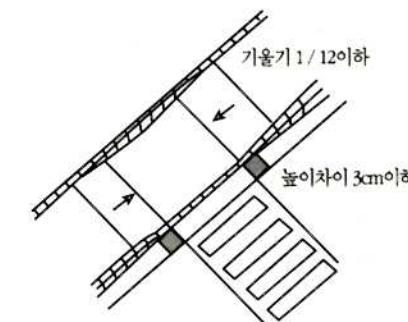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가로수는 지면에서 2.1미터까지 가지치기를 하여야 한다.

2.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횡단보도

가. 턱낮추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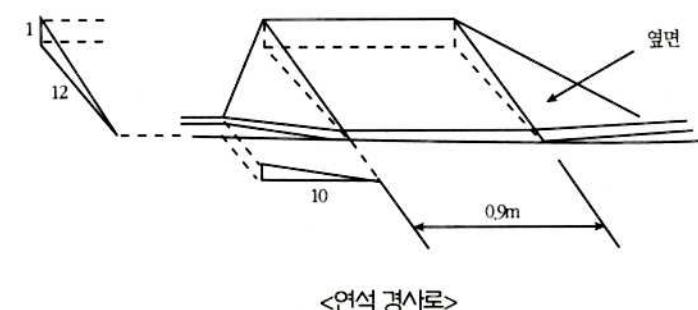
보도등과 차도의 경계구간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높이차이가 3센티미터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되, 연석만을 낮추어 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연석경사로

(1) 연석경사로의 유효폭은 0.9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연석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이하로, 경사로옆면의 기울기는 10분의 10이하로 하여야 한다.



(3)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하며, 보도등의 바닥재와 질감을 달리 할수 있다.

다. 점자블록

(1) 횡단보도의 진입부분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고, 이를 유도하는 부분에는 횡단보도의 진행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으로부터 보도폭의 5분의 4가 되는 지점까지 선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횡단도중의 일시대기용 안전지대와 횡단보도와의 경계부분중 안전지대쪽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고 이를 유도하는 부분에는 횡단보도의 진행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선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의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기타 설비

(1) 횡단보도 주변의 가로등은 조명색을 일반가로등과 달리하거나 조도를 500룩스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노면표시에는 고휘도 반사재료(발색도료)를 사용할 수 있다.

3.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지하도 및 육교

가. 장애인용 승강설비

지하도 또는 육교에는 완만한 경사로로써 계단을 갈음하거나 계단과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함께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및 경사로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9호 내지 제12호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및 경사로에 관한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나. 손잡이

지하도 또는 육교에 별도의 장애인용 승강설비 없이 계단만 설치하는 경우에는 계단의 양측면에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되, 방화문 등의 설치로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화문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분에 한하여 손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손잡이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가. 설치장소

(1) 건축물의 부설주차장과 영 제3조 별표 1 거목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의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에 이르는 통로는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가급적 높이차이를 없애고, 그 유효폭은 1.2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주차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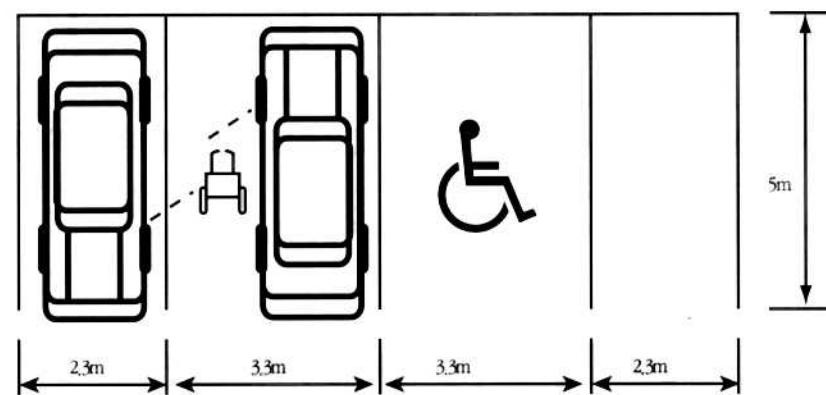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3.3미터이상, 길이 5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2미터이상, 길이 6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주차공간의 바닥면은 장애인등의 승하차에 지장을 주는 높이차이가 없어야 하며, 기울기는 50분의 1이하로 할 수 있다.

(3) 주차공간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다. 유도 및 표시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장애인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2) 주차장의 입구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5.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가. 턱낮추기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차이는 3센티미터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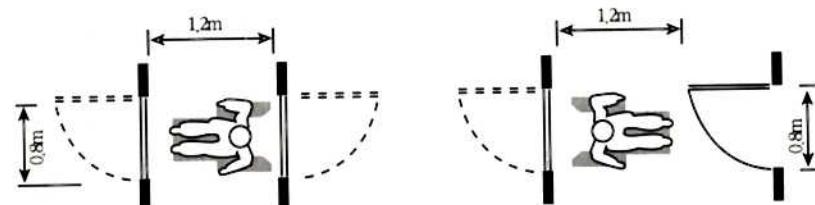
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설치

휠체어리프트 및 경사로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11호 및 제12호의 휠체어리프트 및 경사로에 관한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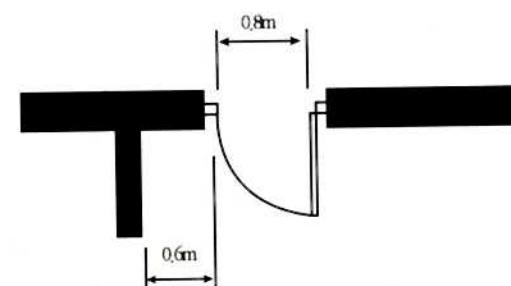
6.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1) 출입구(문)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그 통과유효폭을 0.8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는 1.2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속된 출입문의 경우 문의 개폐에 소요되는 공간은 유효거리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자동문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출입문옆에 0.6미터이상의 활동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3) 출입구의 바닥면에는 문턱이나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나. 문의 형태

(1) 출입문은 회전문을 제외한 다른 형태의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미닫이문은 가벼운 재질로 하며, 턱이 있는 문지방이나 흄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3) 여닫이문에 도어체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문이 닫히는 시간이 3초이상 충분하게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자동문은 휠체어사용자의 통행을 고려하여 문의 개방시간이 충분하게 확보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개폐기의 작동장치는 가급적 감지범위를 넓게 하여야 한다.

다.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1) 출입문의 손잡이는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와 0.9미터사이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그 형태는 레버형이나 수평 또는 수직막대형으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문옆 벽면에는 방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라. 기타 설비

(1) 건축물 주출입구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2) 건축물의 주출입문이 자동문인 경우에는 문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관리자 등을 호출할 수 있는 벨을 자동문옆에 설치할 수 있다.

7.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

가. 유효폭

복도의 유효폭은 1.2미터이상으로 하되, 복도의 양옆에 거실이 있는 경우에는 1.5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나. 바닥

(1) 복도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높이차이를 두는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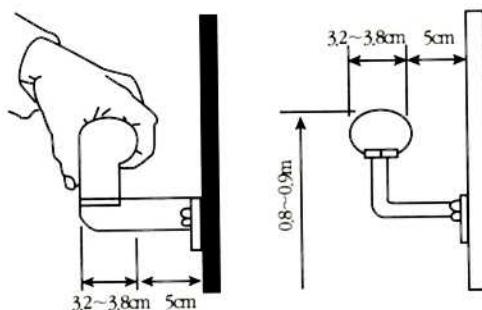
(2)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하며, 넘어졌을 경우 가급적 충격이 적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계단 · 장애인용 승강기 · 화장실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나 시각장애인인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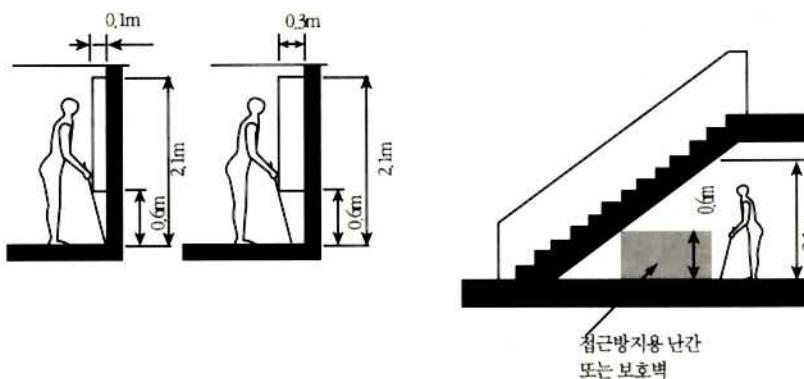
다. 손잡이

- (1) 장애인전용시설의 복도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문 등의 설치로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화문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분에 한하여 손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손잡이의 높이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이상 0.9미터이하로 하여야 하며, 2층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윗쪽 손잡이는 0.85미터내외, 아랫쪽 손잡이는 0.65미터내외로 하여야 한다.
- (3) 손잡이의 지름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3.2센티미터이상 3.8센티미터이하로 하여야 한다.
- (4) 손잡이를 벽에 설치하는 경우 벽과 손잡이의 간격은 5센티미터내외로 하여야 한다.
- (5)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라. 보행장애물

- (1) 통로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미터에서 2.1미터이내의 벽면으로부터 돌출된 물체의 돌출폭은 0.1미터이하로 할 수 있다.
- (2) 통로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미터에서 2.1미터이내의 독립기둥이나 받침대에 부착된 설치물의 돌출폭은 0.3미터이하로 할 수 있다.
- (3) 통로상부는 바닥면으로부터 2.1미터이상의 유효높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높이 2.1미터이내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미터이하에 접근방지용난간 또는 보호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안전성 확보

- (1) 휠체어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복도의 벽면에는 바닥면으로부터 0.15미터에서 0.35미터까지 킥플레이트를 설치할 수 있다.
- (2) 복도의 모서리 부분은 둥글게 마감할 수 있다.

8.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가. 계단의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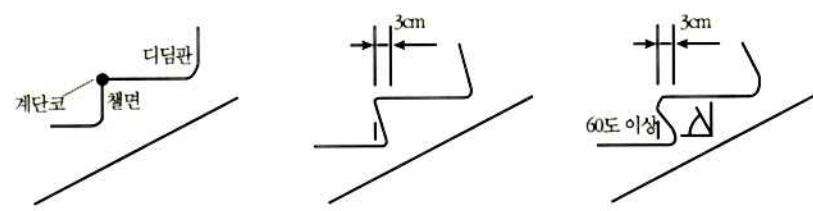
- (1) 계단은 직선 또는 꺾임형태로 설치할 수 있다.
- (2)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8미터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나. 유효폭

계단 및 참의 유효폭은 1.2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옥외피난계단은 0.9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 디딤판과 챤면

- (1) 계단에는 챤면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 (2) 디딤판의 너비는 0.28미터이상, 챤면의 높이는 0.18미터이하로 하되, 동일한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참까지의 계단을 말한다)에서 디딤판의 너비와 챤면의 높이는 균일하게 하여야 한다.
- (3) 디딤판의 끝부분에 아래의 그림과 같이 발끝이나 목발의 끝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챤면의 기울기는 디딤판의 수평면으로부터 60도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계단코는 3센티미터이상 돌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 (1) 계단의 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문 등의 설치로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화문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분에 한하여 손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경사면에 설치된 손잡이의 끝부분에는 0.3미터이상의 수평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3)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충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 (4) 손잡이에 관한 기타 세부기준은 제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마. 재질과 마감

- (1) 계단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할 수 있다.
- (2) 계단코에는 줄눈넣기를 하거나 경질고무류 등의 미끄럼방지재로 마감하여야 한다. 다만, 바닥표면 전체를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계단이 시작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의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바. 기타 설비

- (1) 계단의 측면에 난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간하부에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센티미터이상의 추락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다.
- (2) 계단코의 색상은 계단의 바닥재색상과 달리 할 수 있다.

9. 장애인용 승강기

가. 설치장소 및 활동공간

- (1) 장애인용 승강기는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되어, 가급적 건축물 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2) 승강기의 전면에는 1.4미터×1.4미터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3) 승강장바닥과 승강기바닥의 틈은 3센티미터이하로 하여야 한다.

나. 크기

- (1) 승강기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은 폭 1.1미터이상, 깊이 1.35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2)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8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 이용자 조작설비

- (1) 호출버튼·조작반·통화장치 등 승강기의 안팎에 설치되는 모든 스위치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이상 1.2미터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스위치의 수가 많아 1.2미터이내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1.4미터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다.
- (2) 승강기내부의 휠체어사용자용 조작반은 진입방향 우측면에 가로형으로 설치하고, 그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내외로 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의 유효바닥면적이 1.4미터×1.4미터이상인 경우에는 진입방향 좌측면에 설치할 수 있다.
- (3) 조작설비의 형태는 버튼식으로 할 수 있다.
- (4) 조작반·통화장치 등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라. 기타 설비

- (1) 승강기의 내부에는 수평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 손잡이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2) 승강기내부의 후면에는 출입문의 개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견고한 재질의 거울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의 유효바닥면적이 1.4미터×1.4미터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각 층의 승강장에는 승강기의 도착여부를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향신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기의 내부에는 도착층 및 운행상황을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성신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4) 광감지식개폐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0.3미터에서 1.4미터이내의 물체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5) 사람이나 물체가 승강기문의 중간에 끼었을 경우 문의 작동이 자동적으로

멈추고 다시 열리는 되열림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6) 각 층의 장애인용 승강기의 호출버튼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 (7) 승강기내부의 상황을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승강기전면의 일부에 유리를 사용할 수 있다.

10.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가. 유효폭 및 속도

- (1)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의 유효폭은 0.8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2) 속도는 분당 30미터이내로 하여야 한다.

나. 디딤판

- (1) 휠체어사용자가 승·하강할 수 있도록 에스컬레이터의 디딤판은 3매이상 수평상태로 이동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2) 디딤판 시작과 끝부분의 바닥판은 얇게 할 수 있다.

다. 손잡이

- (1) 에스컬레이터의 양측면에는 디딤판과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이동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2) 에스컬레이터의 양끝부분에는 수평이동손잡이를 1.2미터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3) 수평이동손잡이 전면에는 1미터이상의 수평고정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으며, 수평고정손잡이에는 충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11. 휠체어리프트

가. 일반사항

- (1) 계단 상부 및 하부 각 1개소에 탑승자 스스로 휠체어리프트를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1.4미터×1.4미터이상의 승강장을 갖추어야 한다.
- (2) 승강장에는 휠체어리프트사용자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시설관리자 등을 호출할 수 있는 벨을 설치하고, 작동설명서를 부착하여야 한다.
- (3) 운행중 돌발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비상정지시킬 수 있고, 과속을 제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고정형 휠체어리프트

- (1) 고정형 휠체어리프트는 휠체어받침판의 유효면적을 폭 0.76미터이상, 깊이 1.05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휠체어사용자가 탑승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 (2) 운행중 휠체어가 구르거나 장애물과 접촉하는 경우 자동정지가 가능하도록 감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판이 열린 상태로 운행되지 아니하도록 내부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 (3) 휠체어리프트를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정장소에 접어서 보관할 수 있도록 하되, 벽면으로부터 0.4미터이상 돌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는 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을 폭 0.9미터이상, 깊이 1.2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2. 경사로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 (1) 경사로의 유효폭은 1.2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을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1.2미터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기 곤란한 때에는 0.9미터까지 완화할 수 있다.
- (2)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75미터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 (3)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참에는 1.5미터×1.5미터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기울기

- (1) 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 (2) 높이가 1미터이하인 경사로의 기울기는 8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다만, 옥외경사로의 경우에는 시설관리자 등으로부터 상시보조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에 한한다.

다. 손잡이

- (1) 경사로의 길이가 1.8미터이상이거나 높이가 0.15미터이상인 경우에는 양측면에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2) 손잡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사로의 시작과 끝부분에 수평손잡이를 0.3미

터이상 연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3) 손잡이에 관한 기타 세부기준은 제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 한다.

라. 재질과 마감

- (1) 경사로의 바닥표면은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坦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2) 양측면에는 휠체어의 바퀴가 경사로 밖으로 미끄러져 나가지 아니하도록 5센티미터이상의 추락방지턱 또는 측벽을 설치할 수 있다.
(3) 휠체어의 벽면충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벽에 매트를 부착할 수 있다.

13. 장애인용 화장실

가. 일반사항

(1) 설치장소

- (가) 장애인용 화장실은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내) 장애인용 변기와 세면대는 출입구(문)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재질과 마감

- (가) 화장실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되며, 바닥표면은 물에 젖 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내) 화장실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의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3) 기타 설비

- (가) 화장실의 출입구(문) 옆 벽면에는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별할 수 있는 점자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내) 세정장치 · 수도꼭지 등은 광감지식 · 누름버튼식 · 래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대변기

(1) 활동공간

- (가) 대변기의 칸막이는 유효바닥면적이 폭 1.0미터이상, 깊이 1.8미터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대변기의 좌측 또는 우측에는 휠체어의 측면접근을 위하여 유효폭 0.75미터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대변기의 전면에는 휠체어가 회전 할 수 있도록 1.4미터×1.4미터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다)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8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라) 출입문의 형태는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으로 할 수 있으며, 여닫이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개폐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휠체어사용자를 위하여 충분한 활동공간을 확보한 경우에는 안쪽으로 개폐되도록 할 수 있다.

(2) 구조

(가) 대변기는 양변기형태로 하되, 바닥부착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변기 전면의 트랩부분에 휠체어의 발판이 닿지 아니하는 형태로 하여야 한다.

(내) 대변기의 좌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이상 0.45미터이하로 하여야 한다.

(3) 손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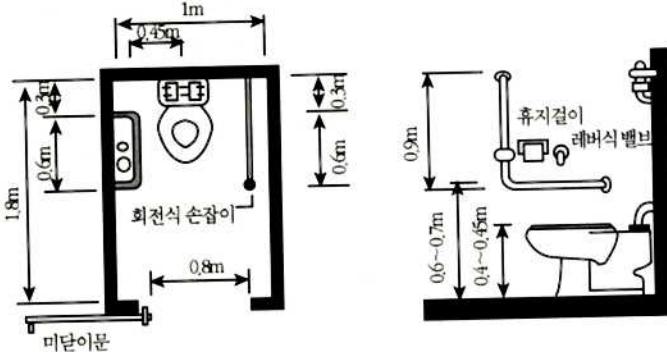
(가) 대변기의 양옆에는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하되, 수평손잡이는 양쪽에 모두 설치하여야 하며, 수직손잡이는 한쪽에만 설치할 수 있다.

(내) 수평손잡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이상 0.7미터이하의 높이에 설치하되, 한쪽 손잡이는 변기중심에서 0.45미터이내의 지점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다른쪽 손잡이는 회전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손잡이간의 간격은 0.7미터내외로 할 수 있다.

(다) 수직손잡이의 길이는 0.9미터이상으로 하되, 손잡이의 제일 아래부분이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내외의 높이에 오도록 벽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손잡이의 안정성 등 부득이한 사유로 벽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바닥에 고정하여 설치하되, 손잡이의 아래부분이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장애인등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수평손잡이와 수직손잡이는 이를 연결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내)의 수직손잡이의 제일아랫부분의 높이는 연결되는 수평손잡이의 높이로 한다.

(마) 화장실의 크기가 2미터×2미터이상인 경우에는 천장에 부착된 사다리형 태의 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4) 기타 설비

- (가) 세정장치 · 휴지걸이 등은 대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출입문에는 화장실사용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소변기

(1)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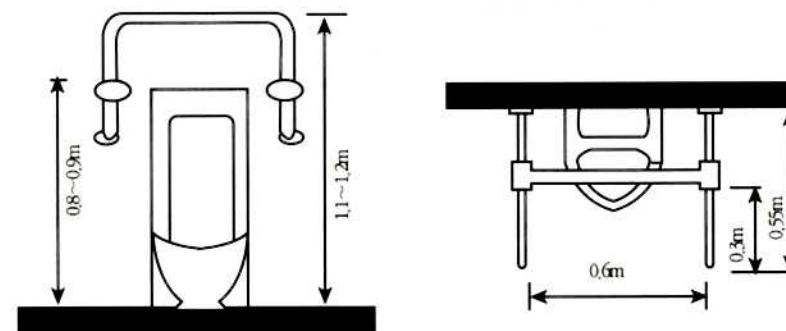
소변기는 바닥부착형으로 할 수 있다.

(2) 손잡이

(가) 소변기의 양옆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수평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이상 0.9미터이하,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0.55미터내외, 좌우 손잡이의 간격은 0.6미터내외로 하여야 한다.

(다) 수직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1미터이상 1.2미터이하, 돌출폭은 벽면으로부터 0.25미터내외로 하여야 하며, 하단부가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세면대

(1) 구조

(가) 휠체어사용자용 세면대의 상단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이하, 하단높이는 0.65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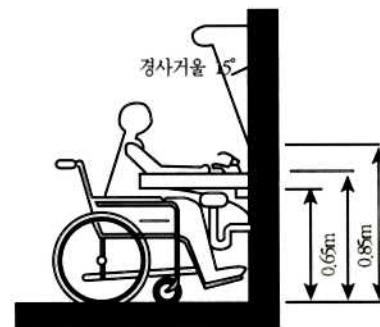
(나) 세면대의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손잡이 및 기타 설비

(가) 목발사용자 등 보행곤란자를 위하여 세면대의 양옆에는 수평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나) 수도꼭지는 냉 · 온수의 구분을 점자로 표시할 수 있다.

(다) 휠체어사용자용 세면대의 거울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세로길이 0.65미터이상, 하단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9미터내외로 설치할 수 있으며, 거울상단부분은 15도정도 앞으로 경사지게 할 수 있다.



14.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

가. 설치장소

욕실은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조

(1) 출입문의 형태는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으로 할 수 있다.

(2) 욕조의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욕조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이상 0.45미터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 바닥

(1) 욕실의 바닥면높이는 탈의실의 바닥면과 동일하게 할 수 있다.

(2) 바닥면의 기울기는 30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3) 욕실 및 욕조의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
하여야 한다.

라. 손잡이

욕조주위에는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마. 기타 설비

(1) 수도꼭지는 광감지식 · 누름버튼식 ·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
하여야 하며, 냉 · 온수의 구분은 점자로 표시할 수 있다.

(2) 샤워기는 얇은 채 손이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
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욕조에는 휠체어에서 옮겨 앉을 수 있는 좌대를 욕조와 동일한 높이로 설치
할 수 있다.

(4) 욕실내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욕조로부터 손이 쉽게 닿는 위치에 비상
용 벨을 설치하여야 한다.

15.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샤워실 및 탈의실

가. 설치장소

샤워실 및 탈의실은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조

(1) 출입문의 형태는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으로 할 수 있다.

(2) 샤워실(샤워부스를 포함한다)의 유효바닥면적은 0.9미터 × 0.9미터 또는 0.75

미터 × 1.3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 바닥

(1) 샤워실의 바닥면의 기울기는 30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샤워실의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라. 손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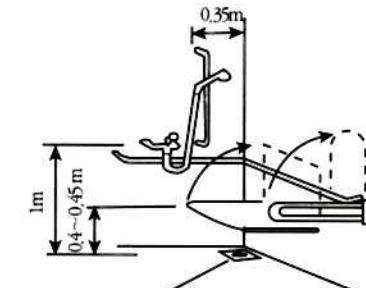
샤워실에는 장애인등이 신체일부를 지지할 수 있도록 수평 또는 수직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마. 기타 설비

(1) 수도꼭지는 광감지식 · 누름버튼식 ·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
하여야 하며, 냉 · 온수의 구분은 점자로 표시할 수 있다.

(2) 샤워기는 얇은 채 손이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
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샤워실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샤워용 접이식의자를 바닥면으로부터 0.4미
터이상 0.45미터이하의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4) 탈의실의 수납공간의 높이는 휠체어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
부터 0.4미터이상 1.2미터이하로 설치하여야 하며, 그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
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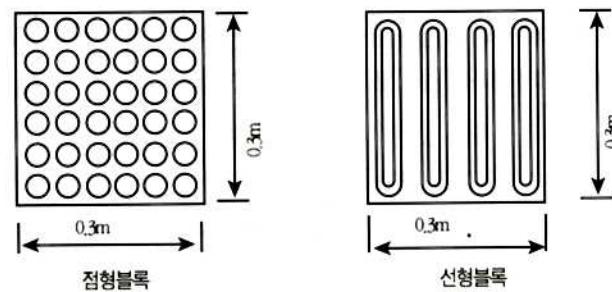
16. 점자블록

가. 규격 및 색상

(1)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하여 점자블록은 아래의 그림과 같은 감지용 점

형블록과 유도용 선형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 (2) 점자블록의 크기는 0.3미터×0.3미터인 것을 표준형으로 하며, 그 높이는 바닥재의 높이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 (3) 점형블록은 블록당 36개의 돌출점 to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
- (4) 점형블록의 돌출점은 반구형·원뿔절단형 또는 이 두가지의 혼합배열형으로 하며, 돌출점의 높이는 0.6 ± 0.1 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
- (5) 선형블록은 블록당 4개의 돌출선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
- (6) 선형블록의 돌출선은 상단부평면형으로 하며, 돌출선의 높이는 0.5 ± 0.1 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
- (7) 점자블록의 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을 사용하되, 상황에 따라 다른 바닥재의 색상과 구별하기 쉬운 것을 사용할 수 있다.



나. 설치방법

- (1) 점형블록은 계단·장애인용 승강기·화장실·승강장 등 시각장애인을 유도 할 필요가 있거나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의 0.3미터 전면, 선형블록이 시작·교차·굴절되는 지점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각장애인의 통행 상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0.3미터 내지 0.9미터의 범위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
- (2) 선형블록은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해서 설치하여야 한다.

17. 시각장애인 유도·안내설비

가.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

(1)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에는 주요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점자, 양각면 또는 선으로 간략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2) 일반안내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점자를 병기하여 점자안내판에 갈음 할 수 있다.

나. 음성안내장치

시각장애인용 음성안내장치는 주요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음성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다. 기타 유도신호장치

시각장애인용 유도신호장치는 음향·시각·음색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특수신호장치를 소지한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경우 대상시설의 이름을 안내하는 전자식 신호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18.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설비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 설비는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경우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비상벨설비 주변에는 점멸형태의 비상경보 등을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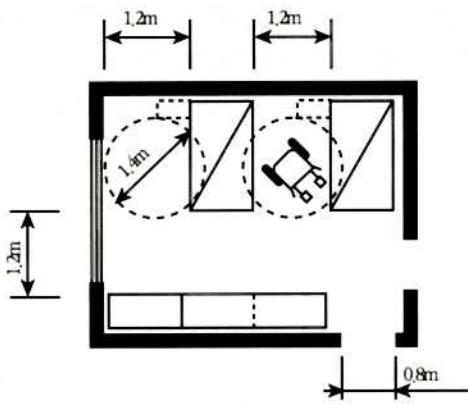
19.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가. 설치장소

장애인용 객실 또는 침실(이하 "객실등"이라 한다)은 식당·로비 등 공용공간에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기가 가동되지 아니할 때에도 접근이 가능하도록 주출입층에 설치할 수 있다.

나. 구조

- (1)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객실등은 온돌방보다 침대방으로 할 수 있다.
- (2) 객실등의 내부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3) 침대의 높이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이상 0.45미터이하로 하여야 하며, 그 측면에는 1.2미터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바닥

- (1) 객실등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 (2)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 라. 기타 설비
- (1) 객실등의 출입문옆 벽면에는 방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 (2) 객실등에 화장실 및 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3호의 장애인용 화장실의
가.일반사항중 (2)의 (가)·(3)의 (내),나.대변기중 (1) 내지 (3), (4)의 (가), 라.세면대
및 제14호의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의 나.내지 마.의 규정을 적용한다.
 - (3) 콘센트·스위치·수납선반·옷걸이 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이상 1.2미터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 (4) 객실등·화장실 및 욕실에는 초인종과 함께 청각장애인용 초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5) 객실등에는 건축물전체의 비상경보시스템과 연결된 청각장애인용 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0.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

가. 설치장소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은 출입구 및 피난통로에서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관람석의 구조

- (1)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의 유효바닥면적은 1석당 폭 0.9미터이상, 깊이 1.3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2)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항상 비워 놓거나, 이동식 좌석을 사용하여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을 마련하여야 한다.
- (3) 난청자를 위하여 자기(磁氣)루프, FM송수신장치 등 집단보청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 열람석의 구조

- (1) 열람석상단까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7미터이상 0.9미터이하로 하여야 한다.
- (2) 열람석의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미터이상, 깊이 0.45미터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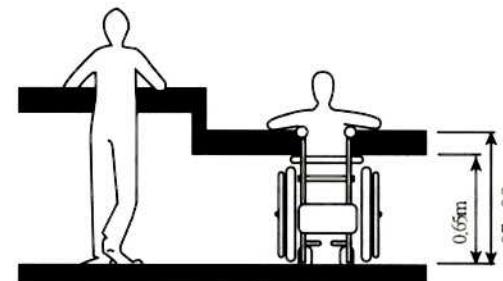
21.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 또는 작업대

가. 활동공간

접수대 또는 작업대의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구조

- (1) 접수대 또는 작업대상단까지의 높이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바닥면으로부터 0.7미터이상 0.9미터이하로 하여야 한다.
- (2) 접수대 또는 작업대의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미터이상, 깊이 0.45미터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2.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가. 활동공간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의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구조

(1) 매표소의 높이는 1.1미터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자동판매기 또는 자동발매기의 동전투입구·조작버튼·상품출구의 높이는 0.4미터이상 1.2미터이하로 하여야 한다.

(3) 음료대의 분출구의 높이는 0.7미터이상 0.8미터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 기타 설비

(1) 자동판매기 및 자동발매기의 조작버튼에는 품목·금액·행선지 등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음료대의 조작기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3) 매표소 또는 자동발매기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23.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교통시설 설비

가. 개찰구

(1) 개찰구의 통과유효폭은 0.8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개찰구의 형태는 자동개폐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개표원이 개찰하거나 시설관리자 등으로부터 별도의 상시안내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승강장

(1) 승강장바닥의 기울기는 100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관리자 등으로부터 별도의 상시안내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3) 승강장의 가장자리로부터 0.3미터 내지 0.9미터 범위안에 위험방지를 위하여 점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장애인용 승강장과 차량의 간격은 3센티미터이내로 하여야 하며, 흄이 곡선인 경우에는 가장 간격이 좁은 위치에 장애인용 승강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철도역사의 경우에는 도시철도건설규칙에 의한다.

(5) 추락할 우려가 있는 승강장의 경우에는 그 양끝부분에 승강장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1미터이상 1.5미터이하의 추락방지용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6) 버스정류장과 택시승강장에는 시각장애인의 위치를 감지할 수 있도록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승강장의 보도폭이 넓은 경우에는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을 병설하고, 좁은 경우에는 점형블록만을 설치할 수 있다.

다. 음향신호기

(1)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는 녹색신호로 바뀔 때 음성에 의한 안내를 하여야 하며, 녹색신호가 커져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균일한 신호음을 내어야 한다.

(2) 수동식 음향신호기를 설치하는 경우 신호상태를 알기 위하여 조작하는 장치는 횡단보도로부터 1미터이내의 지점에 설치되되, 그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미터 내지 1.3미터로 하여야 한다.

(3) 리모콘식 음향신호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동식 음향신호기와 함께 설치할 수 있다.

(4) 교통신호기의 녹색신호시간은 장애인등의 횡단이 가능한 시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4.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버스

가. 자동안내방송장치

자동안내방송장치는 시각장애인등이 도착정류장의 이름 등을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음량과 음색을 내어야 한다.

나. 휠체어승강설비

(1) 휠체어승강설비는 장애인등이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도록 안전한 구조와 강도를 가져야 한다.

(2) 휠체어승강설비를 갖춘 버스안에는 지지대 등 휠체어를 고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장애인등을 위한 좌석

(1) 장애인등을 위한 좌석은 승강구부근의 앓기 편리한 위치에 지정하여야 한다.

(2) 장애인등을 위한 좌석옆에는 장애인등을 위한 좌석임을 나타내는 안내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3) 시내버스 및 시외일반버스의 경우 장애인등을 위한 좌석에 앓은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정차신호용부자를 작동시킬 수 있는 스위치를 설치할 수 있다.

라. 전자문자안내판

(1) 전자문자안내판은 청각장애인등이 도착정류장의 이름·행선지 등을 명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버스안의 전면 상단부분 또는 중간문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전자문자안내판의 문자 및 기호는 두터운 글씨체로 표기하고, 바탕색과 구별하기 쉬운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25.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철도차량

가. 휠체어승강설비

휠체어승강설비는 장애인등이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도록 안전한 구조와 강도를 가져야 한다.

나. 휠체어사용자용 승차공간 또는 좌석

(1)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승차공간 또는 좌석은 차량의 출입구로부터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휠체어사용자용 승차공간 또는 좌석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안에는 지지대 등 휠체어를 고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휠체어사용자용 승차공간 또는 좌석 옆에는 휠체어사용자용임을 나타내는 안내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 장애인용 화장실

(1) 장애인용 대변기는 휠체어사용자용 승차공간 또는 좌석과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화장실의 출입문옆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화장실에 관한 기타 세부기준은 제13호의 장애인용 화장실의 가.일반사항중 (2)의 (개)·(3)의 (내) 및 나.대변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라. 자동안내방송장치 및 전자문자안내판

(1) 자동안내방송장치는 시각장애인등이 도착정류장의 이름·행선지 및 문의 개폐방향 등을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음량과 음색을 내어야 한다.

(2) 전자문자안내판은 청각장애인등이 도착정류장의 이름·행선지 및 문의 개폐방향 등을 명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차량안의 출입구부근에 설치하여야 한

폐방향 등을 명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차량안의 출입구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판의 문자와 기호는 두터운 글씨체로 표기하고, 바탕색과 구별하기 쉬운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26.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도시철도차량

가. 장애인등을 위한 좌석

(1) 장애인등을 위한 좌석은 승강구부근 등 앓기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장애인등을 위한 좌석옆에는 장애인등을 위한 좌석임을 나타내는 안내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휠체어보관공간을 설치할 수 있다.

나. 자동안내방송장치 및 전자문자안내판

도시철도차량에 설치하는 자동안내방송장치 및 전자문자안내판에 관한 사항은 제25호의 라. 자동안내방송장치 및 전자문자안내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7.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공중전화

가. 설치장소

공중전화는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보도 또는 통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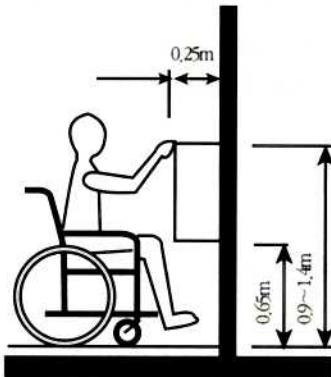
나. 구조

(1) 전화대의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미터이상, 깊이 0.25미터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전화부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도 또는 통로와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

다. 이용자 조작설비

아래의 그림과 같이 동전 또는 전화카드투입구, 전화다이얼 및 누름버튼 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9미터이상 1.4미터이하로 하여야 한다.



라. 기타 설비

지팡이 및 목발 사용자가 몸을 지지할 수 있도록 전화부스의 양쪽에 손잡이를 설치하거나, 지팡이 및 목발을 세울 곳을 마련할 수 있다.

28.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우체통

가. 설치장소

우체통은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보도 또는 통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조

우체통투입구의 높이는 0.9미터이상 1.2미터이하로 하여야 한다.

비고 : 위의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의 항목중 “··· 할 수 있다”로 규정된 사항은 장애인등의 이용편의를 위한 권장사항임.

【별표 2】

편의시설의 안내표시기준(제3조관련)

1. 일반사항

- 가. 편의시설이 설치된 곳에는 장애인등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 안내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 나. 안내표지는 대상시설의 출입구부근 등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일반 안내표지와 동일한 위치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안내표시기준

- 가. 안내표지의 색상은 청색과 백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 나. 안내표지의 크기는 단면을 0.1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다. 시각장애인용 안내표지와 청각장애인용 안내표지는 기본형과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 라.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표지에는 점자를 병기하여야 한다.
- 마. 설치방법은 장애인의 이동에 안전하고 지장이 없도록 배려하여야 하며, 사용장애인의 신체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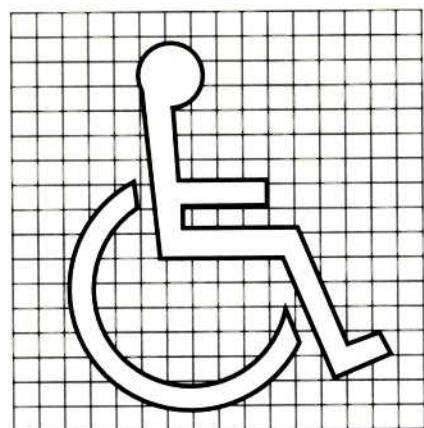
3. 작도법

편의시설 안내표지는 다음과 같이 제작하여야 한다.

【별표 3】

**휠체어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용품의 종류(제6조관련)**

	대상시설	비 치 용 품		비고
		의무용품	권장용품	
근 린 공 공 시 설	읍.면.동사무소	점역업무안내책자·화대경 및 공중 모사전송기	편의시설안내지도	출입구부근, 민원 실 또는 안내실, 매표소 등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편 리한 곳에 비치하 여야 하며, 공중 모사전송기는 사 무용 모사전송기 로 갈음하여 사용 할 수 있다.
	우체국, 전신전화국	화대경 및 공중모사전송기	점역업무 안내책자	
	공공도서관		약시용 독서기	
교육 연구 시설	도서관	약시용 독서기 및 음성지원 컴퓨터	점자프린터	
업 무 시 설	공공업무시설 (공중이 직접 이 용하는 시설에 한한다)	점역업무안내책자(시·군·구청에 한함)·휠체어·화대경 및 공중모사 전송기	점역업무안내책자·편 의시설안내지도 및 난 청자용 조청기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점역관광안내책자	
판 매 시 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 ² 이상인 도·소매점		음성계산기	
관람 집회 시설	공연장		점역공연안내책자	
전 시 시 설	전시장, 동·식물원		휠체어 및 점역전시 안내책자	
교 통 시 설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역사, 도시철 도역사, 공항시설, 무역항에 설치되어 있는 종합여객시설		점역노선안내책자 및 공중모사전송기	



기본형



시각장애인용



청각장애인용

편의시설 다시 보기

발행일
1998년 4월 11일

발행인
조일목, 이계준

펴낸곳
파라다이스복지재단
100-392 서울 중구 장충동2가 186-210
전화 / 02)277 - 3296 팩스 / 02)277 - 3124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모임
120-012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가 35 기사연빌딩 103호
전화 / 02)312 - 5720 팩스 / 02)312-5758

편집 및 제작
출판기획 명작(02-264-7538)

비매품

제단법인파라다이스복지재단(이사장 조일묵)은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이라는 기업이념에 따라 파라다이스그룹에 의해 지난 1994년도 12월에 설립되었으며 장애인들의 일상생활 공간에서 겪는 이동의 불편을 해결하여 생활의 편의를 돋기 위한 장애인주택 개조지원사업에 총 8억원을 지원하여 876가구의 주택개조를 완료하였고(97년), 장애아동교육 컴퓨터 프로그램의 연구 및 제작지원사업에는 총 12억원의 예산으로 9종의 CD-ROM을 개발하여 10,000장을 특수학교, 조기교육 실, 장애인가정 등에 무료로 보급하였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모임(대표 이계준)은 시민운동을 통하여 장애인, 노인 등 이동약자의 이동권과 접근권을 확보하고자 지난 1996년 12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모임은 편의시설의 불편사항을 접수하는 편의전화운영, 편의시설에 대한 각종 실태조사 및 개선 촉구, 시민홍보를 위한 "더 넓고 더 가까운 세상만들기 캠페인" 개최, 편의시설 관련 정책 건의, 편의시설 안내 및 상담, 편의시설 관련 서적 발행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